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72호
2016. 9. 29.(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31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313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314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6
제631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32
제631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6317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53
제6318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6
제631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6320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6321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64
제63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67
제6323호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70
제6324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6
제63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632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6327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632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6329호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89
제6330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6331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6332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6333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6334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6335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6336호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6337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6338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 운영 조례 폐지조례	98
제6339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9
제6340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6341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634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6343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634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634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6346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6347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6348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13
제6349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635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635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규 칙]

제351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8
제351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9

[훈 령]

제1001호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131
------------------------------	-----

◆ 고 시

제2016-2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유수지,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신림공영차고지)	139
제2016-29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56
제2016-2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0
제2016-29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연세대학교)	165

◆ 공 고

제2016-185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72
제2016-185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72
제2016-185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73
제2016-1920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174
제2016-1925호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74
제2016-193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 예고	175
제2016-193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176
제2016-1943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177
제2016-194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77
제2016-1946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179
제2016-195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한성대학교)	180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6-7호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고시 182

◆ **구 고 시**

제2016-10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184

제2016-85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186

제2016-81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189

제2016-8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은평구) 190

제2016-8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192

제2016-82호 도시계획시설(평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강서구) .. 194

제2016-1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구로구) 197

제2016-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 198

제2016-92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201

제2016-129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202

◆ **구 공 고**

제2016-95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성북구) 204

제2016-762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240

제2016-7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 공고(노원구) 244

제2016-1024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양천구) 244

제2016-1026호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양천구) 245

제2016-983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금천구) 246

제2016-13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영등포구) ... 252

제2016-16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267

◆ **사업소고시**

제2016-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1

제2016-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1

제2016-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2

제2016-1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2

◆ 사업소공고

제2016-19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63
제2016-19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64
제2016-19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69

◆ 기 타

제2016-34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72
제2016-34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72
제2016-34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73
제2016-344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74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양 준 욱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의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를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에서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비율을 1천분의 200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3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을 “기금,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에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예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목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금의 용도에는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신설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관련 명칭과 일치하게 제4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명칭 조문 개정

(안 제4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4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자료"란 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장이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7. "시외소재문화재"란 시외로 반출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

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5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 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이하 "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

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4. 기념물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4장 문화재의 지정

제8조(지정문화재)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9조(문화재자료)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의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부터 지정문화재 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3항과 제11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가지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지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

제17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자치구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유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재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자치구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관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2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여부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역범위 내외를 걸쳐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지정문화재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1조(허가기준)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 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⑤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사항)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新舊)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지정문화재 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지정문화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0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20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現象變更)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지정문화재등을 시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5. 제20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
-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정기조사)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및 복구
4.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

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9조(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26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30조(경비 부담)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

제32조(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지정문화재 등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관람료의 징수)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7장 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 소유 문화재를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
2.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당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행사
2. 글짓기·그림 그리기·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행사

④ 제1항에 따라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금액은 시설사용의 유형 및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비용으로 한다.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② 시 소유 문화재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문화재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

의 명령

6.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문
 7.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9.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4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1조(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 제4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 제44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시장, 구청장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4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 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6조(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수하여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시장은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시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문화재수리 등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 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할 내에 두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규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장은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요건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60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시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시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6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0조제1호에 따른 허가사항
2. 제20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3.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시장은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66조(과태료) ① 시장이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제7조제6항 관련)**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세부 규격 등은 ‘서울시 문화재 금연안내표지판 표준형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 1)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같다.

- 2) 흡연구역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제19조 관련)

적용범위 및 대상문화재		높이 기준	비 고 (문화재 높이)
4대문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숭례문, 흥인지문, 우정총국,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 수궁, 종묘, 경희궁, 운현궁, 종묘, 서울 문묘, 탑골공원, 서 울사직단, 서울사직 단정문, 정동교회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높이 기준하여 양각 27° 선 이내	·숭례문 : 19m ·흥인지문 : 20m ·우정총국 : 6.5m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3.2m ·경희궁 : 12m ·운현궁 : 7m ·서울문묘 : 7m ·탑골공원 : 12m ·서울사직단 및 서울사직단 정문 : 6m ·정동교회 : 2m(담장기준)
	기타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 경계)에서 높이 3.6m를 기준 하여 양각 27° 선 이내	·서울성곽은 4대문 내·외 구분없이 적용
4대문 밖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경계)지표에서 7.5m높이를 기준하여 양각 27° 선 이내	
※ 양각 27° 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전체에 대하여 높이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처리기간
				30일
추천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⑥기관명		⑦주소	
	⑧대표자		⑨생년월일	
	⑩전화번호		⑪전자메일	
	⑫수의사 면허번호		⑬수의사 면허일자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추천인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의 장 [인] 서울특별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①교부 번호	②교부 일자	③기관명	④지정일	대 표 자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수 의 사 면허번호	⑧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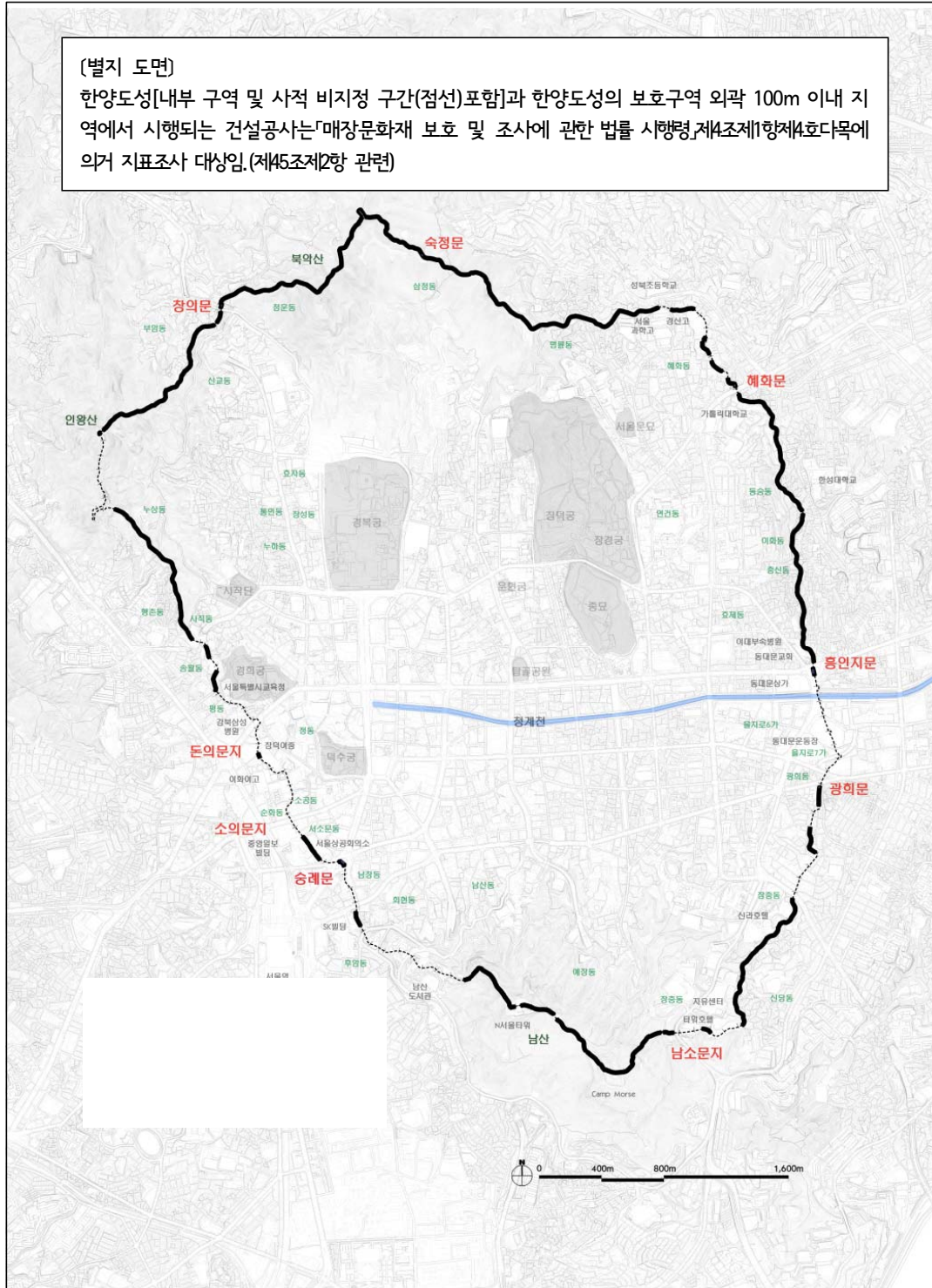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지정번호			②지정일자
신청기관	③기관명		④주 소
	⑤대표자		⑥생년월일
	⑦수의사 면허번호		⑧수 의 사 면허일자
재교부사유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관련 규정 신설함(안 제7조)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상위법 내용 반영함
(안 제19조, 안 제25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반영함(안 제45조, 안 제4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관할구역

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④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제17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8조(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를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문화재
3. 시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

② 제1항에 따른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8조에 따른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제19조(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 나.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 다.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시장은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시장이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군·구 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자등을 인정하면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5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무형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승자 현황
 4.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⑦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유자등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시무형문화재 및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조사 및 기록화)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전문인력의 배치) 시장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 사항)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명령)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시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33조(청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5조에 따른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의 해제
3. 제26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의 해제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 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④ 시장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급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5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 ⑥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시기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⑦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관람료의 징수)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제6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외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시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강좌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행사 지원 등) ① 시장은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표창) 시장은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활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무형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인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과 전수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및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지정기준	비고
1. 시무형문화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시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울의 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서울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별표 2]

시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36조 관련)

분 야 별	선 발 연 령	비 고
연 극 분 야	18 ~ 40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 연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음 악 분 야	18 ~ 30세	
무 용 분 야	18 ~ 30세	
공 예 분 야	18 ~ 35세	
민 속 놀 이 분 야	18 ~ 40세	
제례·궁중음식·그 밖의 분야	18 ~ 40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 나.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및 서울특별시 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라.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마.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바.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안 제28조)
- 사.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아.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상계동)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5 (삼전동)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섭발로 313 (중계동)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검재로9길 45 (면목동)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검재로61길 81 (망우동)	"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물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 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 지원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상계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지적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본부 (자활자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양평쉼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
	◦시립영등포보호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 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 22길 4 (대조동)	"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	"
	◦동작아이존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3. 8. 1.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직 개편, 시설 설치 및 폐지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황 변동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국(과) 변경

나. 시설의 성격 및 법정용어에 맞도록 사회복지시설 명칭 변경

다. 주관국(과) 소관 시설 설치, 폐지 등에 따른 변경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7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자문관”이란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협치협의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서울협치추진단을 협의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부 의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협치자문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①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업무에 지원한다.

제17조(민관협치 실행계획) 시장은 제1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제21조(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나. 서울협치협의회 설치·운영 : 기능, 구성, 임기, 분과·실무 위원회 설치·운영 등

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8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

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자문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수탁사업수익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8조(검사·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운영자문단,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 나. 기본재산의 조성, 기금, 출연금,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7조)
- 다. 검사·보고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1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제5조제2항제3호 중 “조달방법”을 “조달 및 운용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나. 돌봄 분담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 라. 성평등 문화 확산
 -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제6조제2항제2호 중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제6조제2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 6. 여성시설-----
-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의 분과회의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보육,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29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40조의2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평등’ 등 주요개념 정의조항 신설(안 제1조의2)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근거규정 신설(안 12조)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라. 성평등기금, 성평등 주간행사 등 ‘성평등’ 용어의 통일적인 사용 (안제27조 ,안제4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0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 중 “청소년들”을 “학생”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외의 부분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안 제6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안 제9조제5항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를 “제5조제3항에”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안 제20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이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과 일부 불일치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사업 추진 목적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조)

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학생”의 용어 정의 개정 (안 제2조)

다. 제6조의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근거 조항 개정 (안 제5조)

라.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추가 및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이 일부 불일치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안 제6조)

마.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1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 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 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근로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법정 명칭인 근로자를 반영하여 제도 명칭을 근로자이사제로 함(안 제명)
- 나.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은 근로자 100명 이상(안 제4조)
- 다. 근로자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비상임 이사의 1/3 이하에서 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1명 또는 2명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법령·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적용하되,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종료시는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함(안 제8조).
- 바. 근로자이사의 권한, 책임, 이사회 참석시 제척·회피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사. 근로자이사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등 충분한 지원과 협력 등 기관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2조)
- 아. 근로자이사에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보수 : 무보수 원칙, 수당 : 안건 및 자료검토 수당 등 지급가능
- 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 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설립·운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 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연주활동
2.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3. 연주자 육성사업
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운영
5.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원·직원 및 단원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 ① 교향악단에는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연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직원 및 단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가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와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 서울시에서 설립된 다른 재단과 달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현행 조례1)에 재단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립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 동 조례공포안을 공포·시행하여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음악연주활동,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 연주자 육성사업 등
- 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임원 및 직원·단원, 이사회 운영, 사업, 예산과 회계 등
-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임원의 요건과 직무, 음악감독 임면 등
- 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출연금 교부,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 마. 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운영상황의 보고·검사, 공무원의 파견
- 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3호**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1)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보존·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며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하 “역사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
3. 역사문화자원의 미래지향적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
4.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향유의 보장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확산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제17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나.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도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시책 및 지원의 근거조항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이미 2천년 이상 도시역사를 가진 古都 서울로서 과거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조례 명칭 부여.
- 나.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 신설(안 제6조).
- 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 라. 역사도시 연구 지원 및 시민교육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14조)
- 마. 역사도시 정보화 및 교류협력 촉진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15조)
- 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민관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4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7조(검사·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 건강권 보장과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 강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 전문적 지원과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부터 제11조)
나.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
다. 검사·보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역안에서”를 “지역 안에서”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제54조제3항 단

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한다)

제54조제1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하고, “120퍼센트이하”를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제5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로 하고, “상업지역안에서”를 “상업지역 안에서”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 도시환경정비구역중”을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1호 및 제55조제2항 단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용도지역간 적용 용적률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로 추가 확대함(안 제54조 제3항)
- 나. 학교이적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각 용도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함(안 제5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업 종	구 분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 ~ 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 탕 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 ~ 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 공 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 ~ 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 반 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 ~ 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 ~ 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 ~ 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 ~ 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당	330	360	400

※ 비고

1.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노후하수관로 교체, 총인처리시설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안전과 수질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함. 다만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를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변경(안 별표 2 개정)

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감면대상자로 신설·추가(안 제34조 제1항 제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7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제2호 중 “시에”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하고, 제2항 중 “서울시 인권센터에”를 “인권부서에”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을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한다.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연임할”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4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심의”로 하며, 제7항 중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인권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시민인권보호관”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중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를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로 하고, 제2항 중 “보호관”을 “구제위원회”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호관은 인권센터에”를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로 하고, “위원회가”를 “인권위원회가”로 하며, “각 호의 기관의”를 “각 호 기관의”로 하고,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를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보호관은”을 “상임 보호관이”로 하고, “인지조사 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 중 “위임사무에”를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로 한다.

제20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를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이외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인권정책회의를 신설하여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 나. 인권침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권영향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 다.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함(안 제11조)
- 라.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보완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8조~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8호**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경제적 빈곤으로 여성 위생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 받을 권리를 지키며,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생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19조 제6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29호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
2.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자문단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
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
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 등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개발자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관리
3.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물인터넷은 최근 교통, 복지, 관광, 환경 등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 성공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도시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과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0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개인영상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관제요원 등)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 기기 조작행위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나.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 등을 자동으로 남기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접속기록, 영상정보 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4조 제6항 신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4조 제7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1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2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를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11조를 신설한다.

제11조(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확산 전파
3.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
4.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사업을 통한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제공,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주민과의 협력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으로 지역상권 활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를 설치·운영 함(안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3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금융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제3호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를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한다.

제13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의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상충되어 위법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의원 1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희망경제위원회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 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를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수정함(안 제12조 제3호)
- 다.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함(안 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4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3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경우 공단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공단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나.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는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는 바, 비상임이사가 농수산물공사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5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추가(안 제6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6호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2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비상임이사는 서울메트로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공단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서울메트로는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는 바, 비상임이사가 서울메트로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상임이사가 서울메트로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7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2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공단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는 바, 비상임이사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8호**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 운영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1. 폐지이유**

-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 중 시립교향악단 외에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서울시에서 설립된 재단 모두 설립근거가 조례명에서부터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는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치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없으며

- 법인화 이후 예산이 급증하였으나 경영평가는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 전(前)대표이사와 전(前)예술감독과의 갈등이 언론 보도되면서 서울시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나
-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것보다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예술단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 운영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9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등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연합회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현재 서울시에는 25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상호 협조·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중임
-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간 업무협조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支會)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를 육성 및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협력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규정함(안 제5조)
- 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0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상등”을 “제13조제1호에 따른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동상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작성·비치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동상 등의 건립·이전·해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동상 등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하여 관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13조제1호에 따른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으로 의무화함(안 제9조)
- 나.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함(안 제13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1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제6조제1항제3호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용어와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 연장 필요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원화하고, 기금 안에서 계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안 제1조, 제1조의3)

나. 위원회 구성원 중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실효성 제고(안 제6조, 제15조)

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6.12.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기금의 추가적인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2021.12.31일까지로 연장운용(안 제 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의 재무관이 되고,”를 삭제하고,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로 하고, “있는”을 “풍부한”으로 하여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 각 호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 ③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16. 1. 15.)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안 제3조제3항).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함(안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3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한옥밀집지역 등 일부 주택가 관광지에서 관광객에 의한 소음피해, 수면방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거주민의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또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해제를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

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특별관리 지역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를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로 하고, “같은 주변영향지역 내”를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농도 측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16조에 의거 구성 운영중인 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추천대상을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주민까지 확대하여 주민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주민협회의 주민대표 추천대상이 주변영향지역(물재생시설 주변300m이내) 거주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주민까지 확대하여 추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임임원에 대해서만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는 바, 비상임이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공사운영의 투명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5조제2항에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6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미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2미터미만”을 “2미터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로티”를 “필로티”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을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5천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한다.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건축협정

제35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 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정한 토지보다 적은 경우
 - 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 다.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 라. 하나의 토지가 각 목에 부적합하나 인접한 토지가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 영 제115조의4 제1항제4호의 경우 :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30조 관련 별표 4의 1호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 관련 별표 4의 2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을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 심의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 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 ²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 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의 조례 위임사항과 이행강제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옥상 텃밭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장려하며, 건축허가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축 조례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2호다목)
- 공동이용 텃밭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기준을 대지면적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제2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건축협정 가능 요건을 충족시키는 토지로써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에 한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의2 및 제35조의2 신설)
-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대상을 규정함.
(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별표4]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변경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구정비 사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7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통하는”을 “소통·상생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성된”을 “구성되고, 단지 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의”를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로 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근로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55조제1항에”를 “법 제64조제1항에”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에”를 “법 제85조제1항에”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4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 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제14조 중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의”를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조례의 목적에 포함시킴(안제1조),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 규정 신설(안제3조제4항),
- 나.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전문성 제고방안 포함토록 함(안제4조제2항제4호),
- 다.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권고,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안제6조의2),
- 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적정보수 지급 및 처우개선, 인권 존중에 대한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제11조제2항),
- 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추가(안제13조제2항제8호), 공동주택상담실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상담 실시(안제14조).
- 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15.8.11 제정, ’16.8.12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안제2조제2호 및 안제3호, 안제9조제1항, 안제11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8호**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1) 수신반(受信盤) 전원
 - 2) 동력(감시)제어반
 -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방법) ①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소포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시설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5.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 통지) 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 고 사 항	적발일시				
	대상건물	건물명(상호명)			
		주소 또는 위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위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 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접 수 내 용					처 리 내 용					
		신고인		신고내용			현지 확인일자	처리결과	지급금액 (원)	지급일자	은행명 (입금계좌)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대상명 (상호명)	주소	위반내용							

주) 연번은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내부결재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

<접수 번호 : 2017-00>

신고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고 내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건물명 (상호명)		대표자			
	주 소					
확인 및 처리 사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행정처분					
	처리결과 (처리일자)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행정처분란에는 과태료, 조치명령, 현지시정 등 처분사항 및 지급내용 등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결정서

1.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신고 및 확인내용

신고 내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건물명 (상호명)	
	주소 (위치)	
확인 사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3. 결정내용

포상내용 (지급방법)	
이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00소방서장

(☎ -)

<별지 제5호 서식>

제 ○ 차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간 사

서 명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시민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나열함 (안 제2조제2항)

다. 신고자의 자격과,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고 기관, 신고 기간 등의 신고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마. 1인 포상한도와 1건당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동일한 주소지의 사람의 경우에도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1인 포상한도를 적용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49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

한편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관리 시 지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9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 나.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와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1호**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을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별지 서식 1]의 신청서”를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신청서”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불허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별지 서식 1]의 신청서와 [별지 서식 2]”를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와 [서식 2]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서식 3]”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일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전액면제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60 감면

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마.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학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라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 자격검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률을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로 한다.

별표 중 “제3조 및 제7조”를 “제4조 및 제8조”로 하고, 학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0,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운동장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사 위 시 설		30,000			1개월
창 고(물 품 보 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별지 중 “[별지 서식 1]”을 “[서식 1]”로 하고, [별지 서식 1] 중“제11조”를 “제12조”로,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서식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서식 2]”를 “[서식 3]”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제3조)
- 나.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불허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밝혀야 함(제6조)
- 다.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용료 이외에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 안된다고 규정함(제8조)
- 라.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명시함(제8조 및 제9조, 별표)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514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 중 “보한다”를 “보하며, 학생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한다”를 “보하며, 전산정보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2.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3.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제3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양자정보처리연구소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립대학교 학생지원 및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조정 사항과 에스에이치(SH)공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심리 상담 및 양성평등 관련 상담 수행으로 학생과 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의 정규기구화
 - 나.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수요 증가로 부서간 조정 등 전산정보원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부원장 설치 및 분장사무 구체화
 - 다. 학교 내 타 부설연구소와의 명칭 일원화를 위한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명칭 변경
 - 라.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3515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5급 소계란,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223	767	41	51	336	28
시설	173	102			70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094	1,564	86	107	1,256	81
행정	1,118	715	64	41	244	54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111	1,085	83	148	1,758	37
행정	1,085	531	59	59	410	26
전산	109	65	2	8	33	1
시설	449	159	1	4	279	6
행정·공업 또는시설	38	37		1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전기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77	233	50	92	1,400	2
행정	216	38	15	15	148	
전기운영	114	1	2	2	109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전기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187	6	4	6	171	
행정	32	1	1	1	29	
전기운영	26				26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재배치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사항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 정원 변경 없이(총 정원 17,471명 불변), 정원의 직급·직렬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보강 및 직무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01호**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6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의 적법·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 법률자문”이란 법률지원담당관이 실시하는 법률자문을 말한다.
2. “외부 법률자문”이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법률자문을 말한다.
3.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회 행정기관의 법률자문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시 본청 부서를 경유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법률자문 대상) ① 법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결재 사항으로서 소관부서가 사전검토 요청을 한 사안
2. 주요 시책사업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
3.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법률적 쟁점이 된 사안
4. 시 소관 사업 중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정부, 외국인 및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과

관련된 의향서, 양해각서, 협약,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업무 및 국제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정책, 그 밖에 관련 업무(이하 “국제업무”라 한다)

5.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안

6.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 규정이나 문구에 대한 단순한 확인 내지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

2. 외부 소송대리인이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상소여부에 대한 판단 등 당해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

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에 관한 사안이거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

4.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③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여부 등 자치법규 심사와 관련한 법률자문은 법무담당관이 처리하되,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내·외부 법률자문) ① 내부 법률자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 및 유선, 이메일 상담, 회의 참석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1. 긴급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2. 행정상 적법절차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3. 장기적인 검토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내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② 외부 법률자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

2.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

3.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6조(법률자문관리시스템 운영) 법률자문 요청사항과 법률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물,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통보받은 최종협약 또는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7조(법률자문관리시스템 기능) 제6조에 따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이용방법: 팀별 소관부서, 의뢰방법, 법률자문 처리과정(프로세스)에 대한 안내사항

2. 법률자문 의뢰: 법률자문 관리대장(관리번호, 접수일, 제목, 의뢰부서, 담당번호사, 처리상태 등) 및 안전별 세부내용에 대한 입력·수정·검색 등

3. 참고자료: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사례 모음, 자료실, 유용한 사이트 등

4. 통계: 기간 및 부서별 법률자문 건수 등

제8조(자문내역의 전산관리)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자문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고 전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11조에 따른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 결과물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산관리를 갈음한다.

제9조(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법률자문 대상에 해당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에 제2항에서 제시한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이를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의뢰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중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의뢰 배경·사건경위·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외부 자문결과·소관부처와의 협의 내용 및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0조(법률자문 접수 및 철회)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문의뢰에 대하여 각 자문사항을 사전검토 후 제4조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인지 여부와 자문형태를 결정한다.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내부 법률자문 사안일 경우 내부 법률전문관을 지정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외부 법률자문 사안일 경우 법률고문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법률자문의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법률고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법률고문이 결정되면 법률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외부)를 발급하여 소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법률자문의뢰서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받은 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의뢰서를 즉시 전달하고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률검토의견 회신은 서면으로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지원담당관이 접수 후 자문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법률 검토의견 회신 및 추가 질의) 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내부 법률전문관 및 법률고문은 법률적 검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외부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내부 및 외부 법률자문 검토의견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 검토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은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내부 법률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해줄 것을 법률지원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고, 법률지원담당관은 협의 후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12조(법률 검토의견 조정) ① 법률 검토의견은 해당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 및 법률전문관의 의견을 우선시하되,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해당 법률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률 검토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 및 법률전문관, 소관부서의 장과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조정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고문 및 법률전문관,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법률 검토의견을 정한다.

제13조(관계 전문가 등 인력풀 운영)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법률적 쟁점사항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법률고문 등으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법률자문 사무전결 기준) ① 법률자문 검토의견은 담당팀장의 검토를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률자문의 결과가 시정 전반이나 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2개 이상의 실·본부·국 등이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
3.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항

제15조(법률 검토의견의 인용) 소관부서의 장은 방침, 공문, 내부 보고문서에 제11조에 따라 회신 받은 법률 검토의견을 인용하는 경우 원문을 직접 인용하여야 하고, 원문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하거나 편집, 재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협조결재)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의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법률 검토의견을 인용할 경우
2. 시장단 방침에 법률적 검토가 포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외에 법률지원담당관의 협조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의 협조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법률 검토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법률 검토의견의 공개 제한) 법률 검토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의뢰하는 사안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의견으로서 업무 처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 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외부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 및 훈령의 폐지)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단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국제법률지원에 관한 규정」은 본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자문이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 의뢰서(내부)

의뢰부서	○○과/○○담당관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희망 회신일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사유 부기)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담 당							
건 명	(예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						

1 자 문 배 경

〈작성요령〉

1. 자문의 목적, 취지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2. 질의사항 관련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쟁점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옆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설, 을설 기재시 부서의견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문 요지

자문 1항 :

○

(갑설)

-

(을설)

-

※ 부서검토 의견 : 갑설, 을설

자문 2항 :

○

(갑설)

-

(을설)

-

※ 부서검토 의견 : 갑설, 을설

붙임 : 입증자료, 관련법령 등

〈유의사항〉

1.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담당변호사 배정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 접수 순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회신 드리므로, 회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10일 이내에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회신 희망일과 그 사유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자료(관련 방침 포함)가 있는 경우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파악하신 관련 법령(조례 포함)은 빠짐없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자문의뢰번호 2016-○○○-○]

법률자문 의뢰서(외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변호사님 귀하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2016. 8.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1. 의뢰 안건 : 따로붙임

2. 안건 의뢰자

○ 담당자

- ○○○○과 : ○○○ 주무관 (abcdefg@seoul.go.kr)
(연락처 : 전화 2133-○○○○)
- 법률지원담당관 : ○○○ 주무관 (hijklmn@seoul.go.kr)
(연락처 : 전화 2133-○○○○)

- ▶ ○ 자문의견서는 질의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시 미리 ○○○ 주무관과 협의·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의견서는 업무담당자 및 법률지원담당관 담당자에게 각각 E-Mail(또는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료 지급 요청시에는 세금계산서(자문의뢰번호를 필히 기재), 청구서와 자문결과(의견서) 원본(날인)을 법률지원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유수지,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신림공영차고지)

1.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2016.3.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유수지,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462호(2016.07.14.)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도로,유수지,자동차정류장)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주차계획과 및 관악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
- 명 칭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12,290㎡, 박차면수 101대, 저류조 35,000㎡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 6층)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주차계획과 ☎2133-2374 및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 879-6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신림공영차고지(지류조합)건설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도로,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44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 1동 702호(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김혜란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2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57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8길 62, 301호(연희동, 청학빌라)	김준기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3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7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5-13	김혜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11층	주식회사복메 디칼코리아	근저당 권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4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486	서울시 종로구 시직로8길 34, 702호(내수동, 경희공의아침 3단지아파트)	김준희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5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188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7-8, 201호(불광동, 청나맨션)	김정선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6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94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1동 4203호(송도동,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임지현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 용	
7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94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1동 4203호(송도동, 송도 더샵퍼스트 월드)	엄태익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8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7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동 504호(정자동, 한솔 마을)	김정현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9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29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318-407	김정철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10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445.2	서울시 서초구 식유촌길 84-0(우 면동)	김정일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11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296.8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 46에비뉴 202-40	김정호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12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6188 분의 179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씨 동 1003호(서초동, 현대슈퍼빌)	김형숙				
	신림동산7-12		14	14							
	신림동산7-13		7	7							
13	신림동산7-14	임야	8	8	2분의 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68-4	안성우				
14	신림동산7-14	임야	8	8	2분의 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68-4	안성균				
15	신림동산8-1	임야	7	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아 파트 410동 602호	이숙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이 내 용	
16	신림동산9-11	임야	515	515	92331 분의 6971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재단법 인서울 대학교 발전기 금				
	신림동산9-12		37	37							
	신림동산9-13		293	293							
	신림동산9-14		157	157							
17	신림동산9-11	임야	515	515	92331 분의2 261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 학교				
	신림동산9-12		37	37							
	신림동산9-13		293	293							
	신림동산9-14		157	157							
18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991.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68-4 석수경남아너스빌 106-1804	박찬휘				
19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1983. 5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 아파트 41-305	김경자				
20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3636 7분의 1182. 5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07 대원 아파트 102-801	이경자				
21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3636 7분의 1182. 5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82-22 신 건영빌라 10-202	이경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집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 용	
22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36367 분의 1182.5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8 (우이동)	이경미				
23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36367 분의 1182.5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8 (우이동)	이준용				
24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2분의 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21 주공아 파트 515-201	유형석				
25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2분의 1	미합중국 07024 뉴저지 포트리 해 밋에버뉴 2467	유명자				
26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2분의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0-18 삼호 가든맨션 마-503	유명숙				
27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496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22-2 현대 아파트 101-1001	이돈구				
28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1322.5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00, 디 동 2306호(반송동, 메타폴리스)	임종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29	신림동신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330.5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 333동 1602호(잠실동, 트리지움)	최은종				
30	신림동신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330.5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4길 6, 501호(석촌동)	최덕균				
31	신림동신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78.5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70길 12, 2 동 1101호(창동, 동아아파트)	성종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한마음금융 주식회사	가압류	
32	신림동신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78.5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81	성문옥				
33	신림동신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78.5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07, 22 동 1002호(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성호열				
34	신림동신9-15	임야	389	389	12397 분의 78.5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1, 1 층	성문선	도봉세무서	국	압류	
35	신림동신9-16	임야	313	313			서울 특별시				
36	신림동136-16	전	17	17	33880 분의 3729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 파트 423-401	이종호				
37	신림동136-16	전	17	17	33880 분의 248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 파트 423-401	이희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이 내 용	
38	신림동136-16	전	17	17	33880 분의 364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 파트 423-401	이진아				
39	신림동136-16	전	17	17	4235 분의 847	미합중국 90703 캘리포니아주 세 리토스시 케리트에베뉴 17222	이영철				
40	신림동136-16	전	17	17	4235 분의 847	캐나다 브이301 3세3 브리티쉬 칼 럼비아주 코퀴틀램시 할렘 코트 3167	이영수				
41	신림동136-16	전	17	17	4235 분의 462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 트 121-1206	이승은				
42	신림동136-16	전	17	17	3080 분의 2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406동 602호(이매동, 아름마을)	이승자				
43	신림동136-16	전	17	17	3080 분의 176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7길 22, 101동 903호(역삼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이진경				
44	신림동136-16	전	17	17	3080 분의 1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10동 1102호(삼평동, 봇들 마을)	이관준				
45	신림동136-17	전	117	117			관악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46	신림동136-18	전	80	80			국(경찰청)				
47	신림동136-19	대	452	452			서울특별시				
48	신림동136-20	전	4	4			서울특별시				
49	신림동137-4	대	286	286			서울특별시				
50	신림동138-1	대	43	4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8-6	김호민		서울특별시	압류	
	신림동138-64		7	7							
51	신림동138-65	전	6	6			서울특별시				
52	신림동138-67	잡종지	64	64			국(경찰청)				
53	신림동138-68	전	104	104			국(경찰청)				
54	신림동138-69	잡종지	26	26		서울시 양천구 목동 775-29 황제아파트 3동 208호	신명준				
55	신림동138-22	대	133	133			서울특별시				
56	신림동138-23	잡종지	76	76	5분의 1	대전시 서구 월평동 223 무궁화아파트 204-1107	정환숙				
	신림동138-71		35	3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57	신림동138-23	잡종 지	76	76		서울시 마포구 홍강동 500 마포 대림1차아파트 102-1502	정환근				
	신림동138-71		35	35							
58	신림동138-23	잡종 지	76	76	5분의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아파트 311-1005	정환보				
	신림동138-71		35	35							
59	신림동138-23	잡종 지	76	76	10분의 1	세종시 노을3로 14, 110동 1201호(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정명아				
	신림동138-71		35	35							
60	신림동138-23	잡종 지	76	76	10분의 1	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19, 708 동 909호(노량진동, 신동아리버 파크)	정혜원				
	신림동138-71		35	35							
61	신림동138-24	전	150	150	4분의 1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08-26 현대맨션 비01호	이찬구				
	신림동138-72		13	13							
62	신림동138-24	전	150	150	4분의 1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04-6 송내복사골뜨란채아파트 101-1504	이화숙				
	신림동138-72		13	13							
63	신림동138-24	전	150	150	4분의 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8-56	이현구				
	신림동138-72		13	13							
64	신림동138-24	전	150	150	4분의 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95-47	이문숙				
	신림동138-72		13	13							
65	신림동138-29	잡종 지	170	170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94 신 림현대아파트 107-506	윤성섭				
	신림동138-73		40	4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인 내 용	
66	신림동138-30	잡종지	228	228	2분의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9-11 수아빌딩 401	연속자				
	신림동138-74		23	23							
	신림동138-75		1	1							
67	신림동138-30	잡종지	228	228	255분의 33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318	김청택				
	신림동138-74		23	23							
	신림동138-75		1	1							
68	신림동138-30	잡종지	228	228	255분의 94.5	캐나다 온타리오주 옐5세 3 브이5 미시포거 바이버빌딩 4187	김청자				
	신림동138-74		23	23							
	신림동138-75		1	1							
69	신림동138-76	잡종지	37	37	2분의 1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7-231	조용식				
70	신림동138-76	잡종지	37	37	2분의 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98-7 4층	김학성				
71	신림동138-35	잡종지	37	37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54-7, 302호	고형자				
	신림동138-77		39	39							
	신림동138-78		106	106							
72	신림동138-79	잡종지	62	6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63동 705호	강응선				
73	신림동138-47	잡종지	125	125	4분의 1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04-6 송내 복스골뜨관체아파트 101-1504	이화숙				
	신림동138-80		1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인 내 용	
74	신림동138-47	잡종지	125	125	4분의 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8-56	이현구				
	신림동138-80		1	1							
75	신림동138-47	잡종지	125	125	4분의 1	서울시 관악구 방천길 26(신림동)	이문숙				
	신림동138-80		1	1							
76	신림동138-47	잡종지	125	125	4분의 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0-3	대운강업 주식회사				
	신림동138-80		1	1							
77	신림동138-48	잡종지	21	21			서울특별시				
78	신림동140-2	답	2,253	2,253	11분의 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0-87	박쌍심				
	신림동140-35		15	15							
79	신림동140-2	답	2,253	2,253	11분의 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0-87	김효정				
	신림동140-35		15	15							
80	신림동140-2	답	2,253	2,253	11분의 2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49-2, 2층 203호	김형성				
	신림동140-35		15	15							
81	신림동140-2	답	2,253	2,253	11분의 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56 미성아파트 2-507	김형섭				
	신림동140-35		15	1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82	신림동140-2	답	2,253	2,253	11분의 2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1길 28, 301 호(상도동, 삼성빌라)	김형석				
	신림동140-35		15	15							
83	신림동140-3	답	3,196	3,196		서울시 관악구 대학길 23(신림동)	김유기				
	신림동140-36		10	10							
84	신림동140-37	잡종지	124	12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19	정후열				
85	신림동 140-18	대	176	176			서울특별시				
86	신림동 140-19	대	25	25			서울특별시				
87	신림동140-20	도로	2	2			서울특별시				
88	신림동 140-27	답	10	10			서울특별시				
89	신림동144-7	답	110	110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인 내역	
90	신림동808-709	하천	64	64			국(경철정)				
	신림동808-710		8	8							
	신림동808-711		4	4							
91	신림동809-3	도로	11	11			국(국토교통부)				
92	신림동136-5	전	6	6	11분의 1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363-118	변옥순				
93	신림동136-5	전	6	6	11분의 3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363-118	이영일				
94	신림동136-5	전	6	6	11분의 2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363-118	이영근				
95	신림동136-5	전	6	6	11분의 2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363-118	이영현				
96	신림동136-5	전	6	6	11분의 2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363-118	이영수				
97	신림동136-5	전	6	6	11분의 1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363-118	이승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 용	
98	신림동136-10	대	53	53			서울특별시				
99	신림동136-15	전	3	3			서울특별시				
100	신림동138-4	대	13	13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78, 102동 902호 (면목동, 면목성원아파트)	이승희				
101	신림동138-21	잡종지	175	17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당산삼성레미안 408-404	한상일				
102	신림동138-25	잡종지	159	159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19-1 우미연립 나동 103호	최동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군자동지점)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군자동지점)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지상권	
103	신림동138-26	잡종지	179	179		서울시 관진구 구의동 199-18 한양 가-208	심상숙				
104	신림동138-27	잡종지	225	225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34	정서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인 내 용	
105	신림동138-28	잡종지	152	152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1가 281-36	김명란				
106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6.6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08-26 현대맨션 비01호	이찬구				
107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6.6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04-6 송내복사골뜨란채아파트 101-1504	이화숙				
108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6.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8-56	이현구				
109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6.6	서울시 관악구 방천길 26 (신림동)	이문숙				
110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12.566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93, 108동 603호(봉천동, 벽신블루밍아파트)	서용석				
111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12.566	세종시 나리1로 15, 312동 1401호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서준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인 내 용	
112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12.568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3동 905호(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서봉석				
113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71.10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278, 102동 902호(면목동, 면목성원아파트)	이승희				
114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198분의 62.8	서울시 관악구 양산길 29-3(신림동)	윤상호				
115	신림동138-46	잡종지	119	119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278, 102동 902호(면목동, 면목성원아파트)	이승희				
116	신림동140-5	대	185	1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1동 802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임숙희				
117	신림동140-24	답	102	10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41-21	김유기				
118	신림동140-25	답	66	66		서울시 관악구 대학길 23(신림동)	김유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내 내용	
119	신림동140-26	답	46	46		서울시 관악구 대학길 23(신림동)	김유기				
120	신림동140-34	답	49	49			서울특별시				
121	신림동141	전	188	18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12동 1003호	은희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50 성원아파트 101-1505	함현숙	가등기권자	
									국	압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성북구 하월곡동 88-469번지 일대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2016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16.8.23.)를 거쳐,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I.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 지형	성북구 하월곡동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478,515 ㎡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 없음)

3.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변경 없음)

1) 촉진구역(변경 없음)

2) 촉진계획(변경 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2)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3) 정비기반시설 계획(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기타사항(변경 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변경)

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준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미아지구단위계획 : 1-10획지 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블럭	1-10	하월곡동 88-469번지 외 16필지	1,625	
변경	1블럭	1-10	하월곡동 88-469번지 외 14필지	1,357	
		-	하월곡동 88-481번지 외 1필지	164	개별필지로 준치

※ 측량결과 등에 따른 면적 조정

▶ 획지1-10: 구적면적 1,625㎡(고시면적) → 공부면적 1,521㎡(감 104㎡)

2) 1) 이외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준치관리구역 및 기타사항 변경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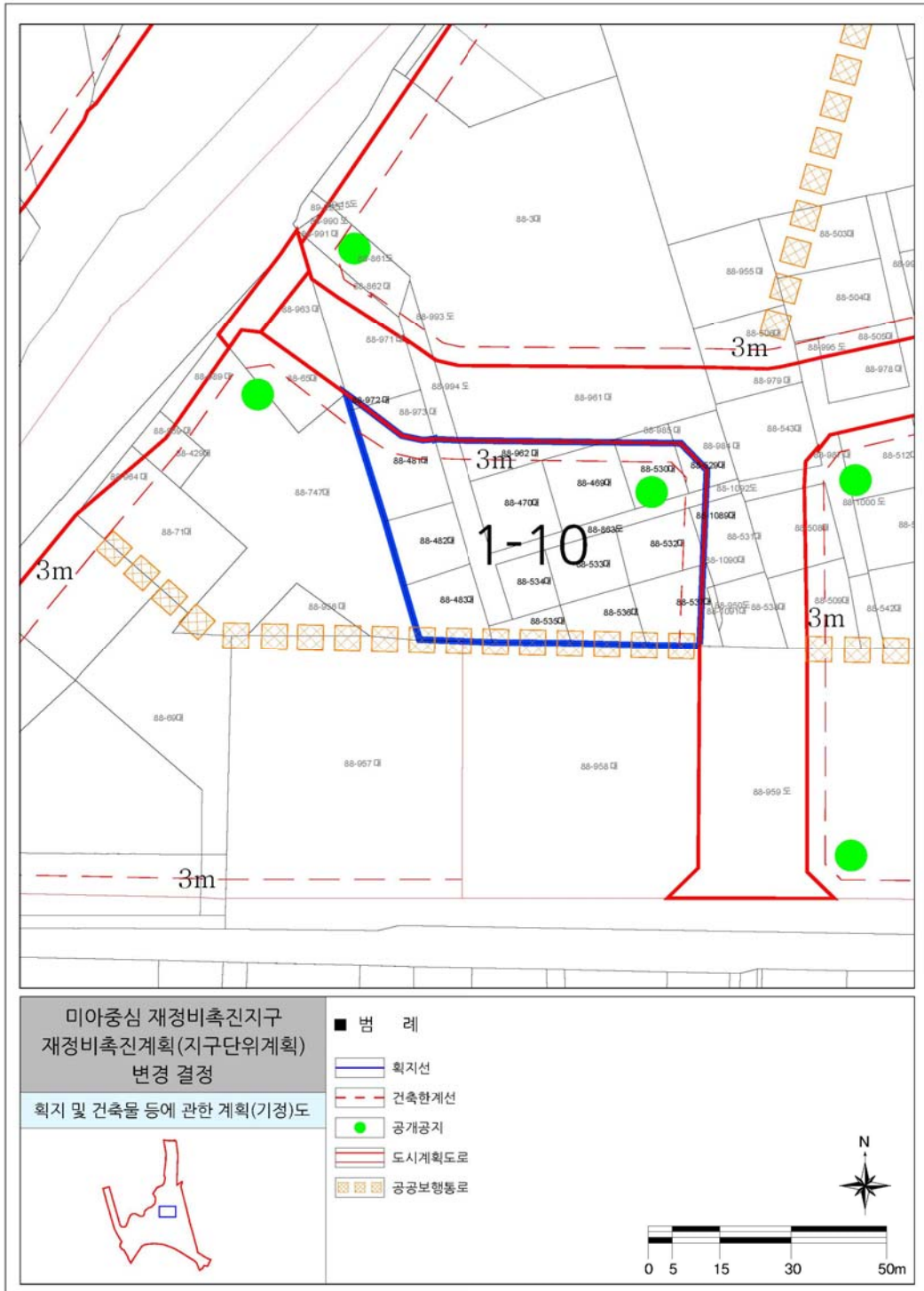
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준비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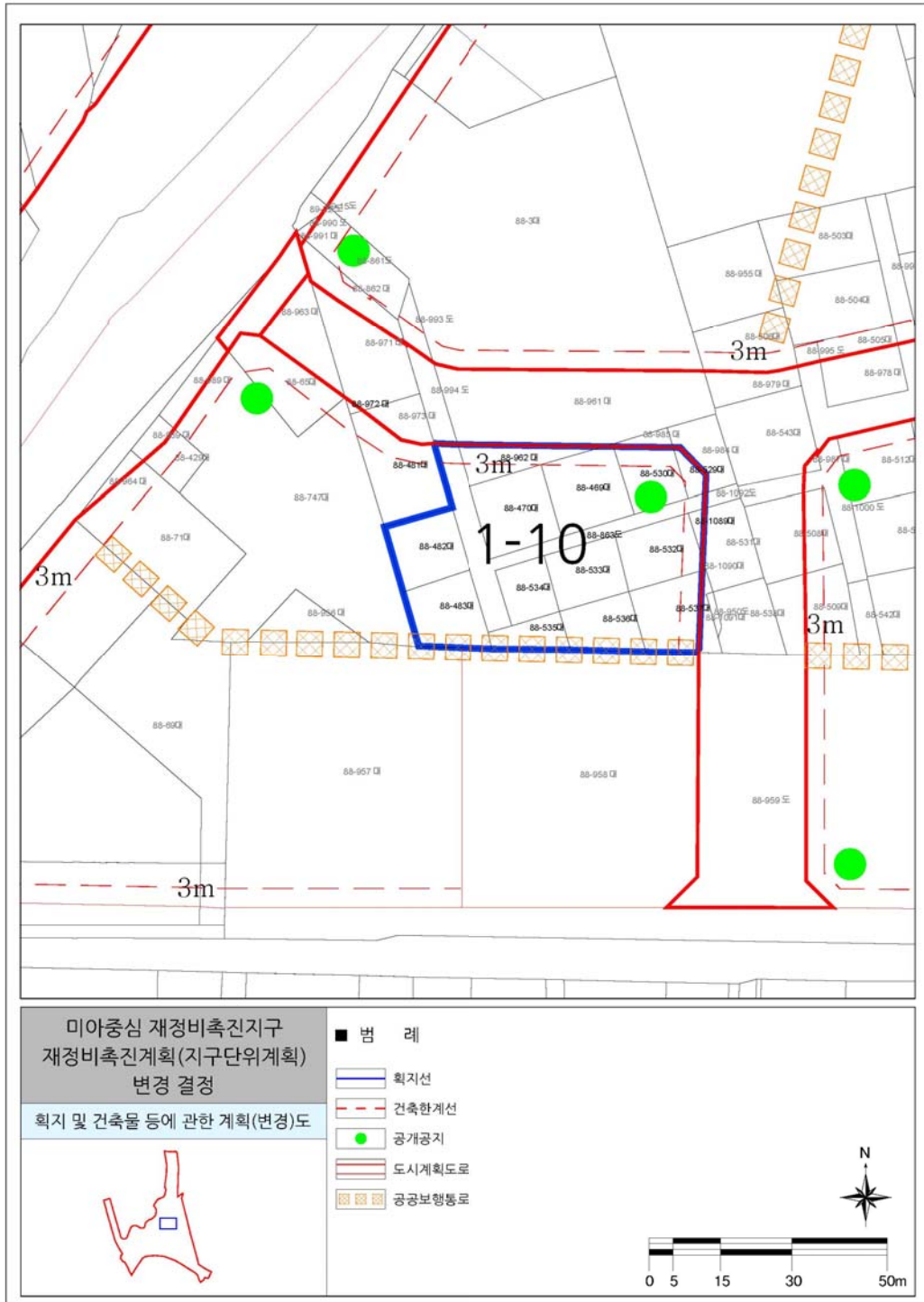
II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거사업과 (☎02-2133-7217)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52)에 관계도서를 준비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 1블럭 가구 내 획지계획에 관한 계획) 결정(기정)도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 1블럭 가구 내 획지계획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9호(2016.5.19.)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0호(2016.9.1.)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 고시로 결정된 서울역고가(보행자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서울역고가 이용자 접근 편의성 향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등 공공의 이용성 제고를 위해 호텔마누 전면부 대지에 설치하는 연결통로에 대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 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일부 입체적 결정
변경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 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일부 입체적 결정 (연결통로 추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연결통로1	남대문로5가 526 일대	길이	-	증 3.15m	3.15m	-	변경없음 (대우재단빌딩)
			폭	-	증 6m	6m		
			높이 (지표면기준)	-	증 4.8~5.8m	4.8~5.8m		
			면적	-	증 18.3㎡	18.3㎡		
신설	연결통로2	남대문로5가 84~16 일대	길이	-	증 12.25m	12.25m	-	추가 (호텔마누)
			폭	-	증 1.8~2.75m	1.8~2.75m		
			높이 (지표면기준)	-	증 0~5.62m	0~5.62m		
			면적	-	증 24.9㎡	24.9㎡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	소로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L=2.7~9.25m, B=1.8~3m, H=0~5.62m)	호텔마누 대지경계선 ~ 건물 외벽선, 지상 연결로 에 대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 지형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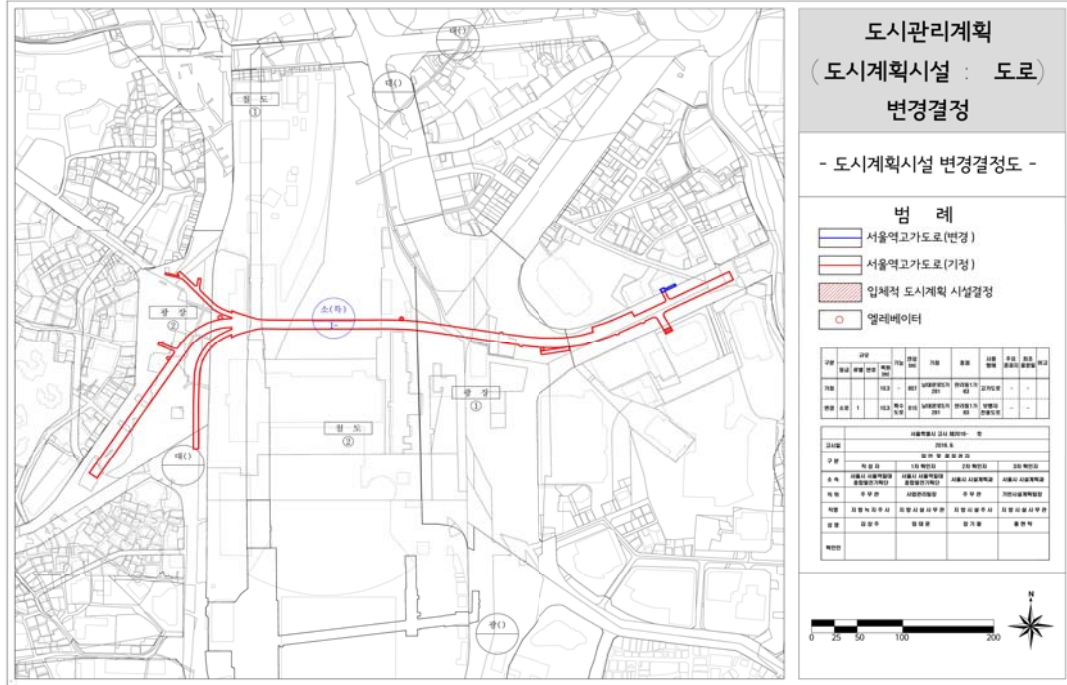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5) 및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2133-8668)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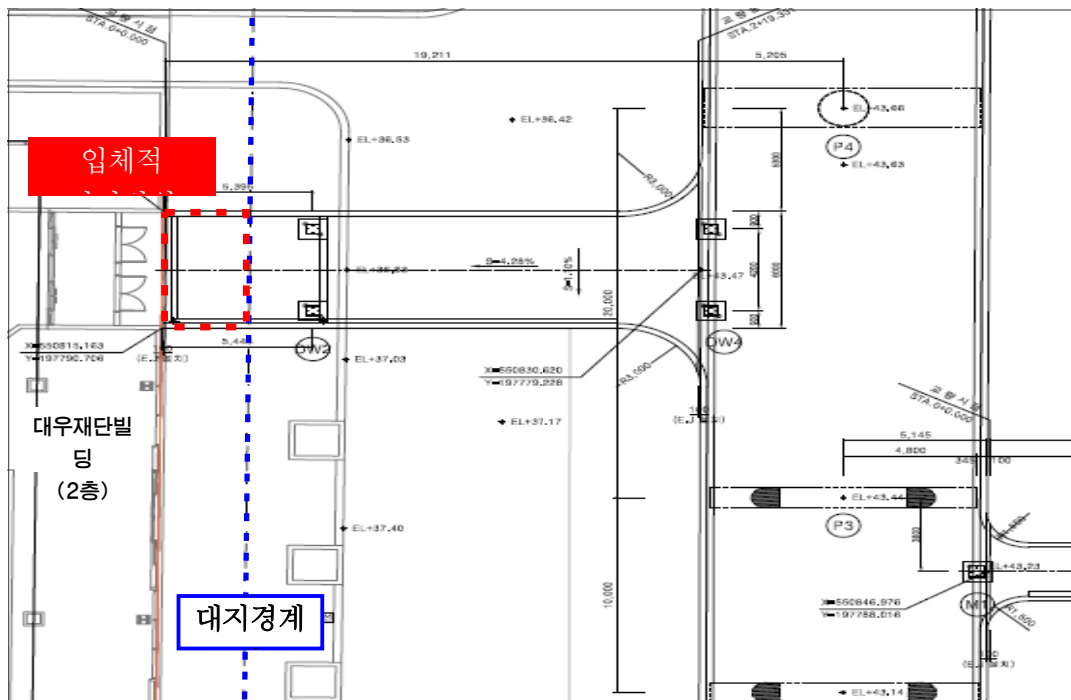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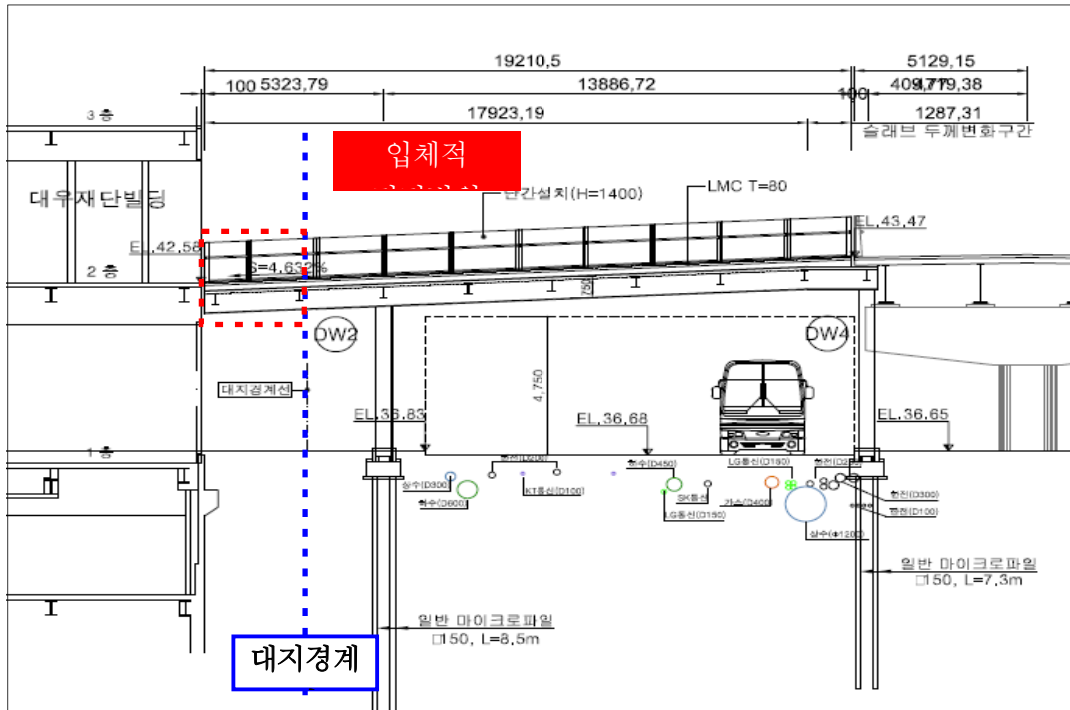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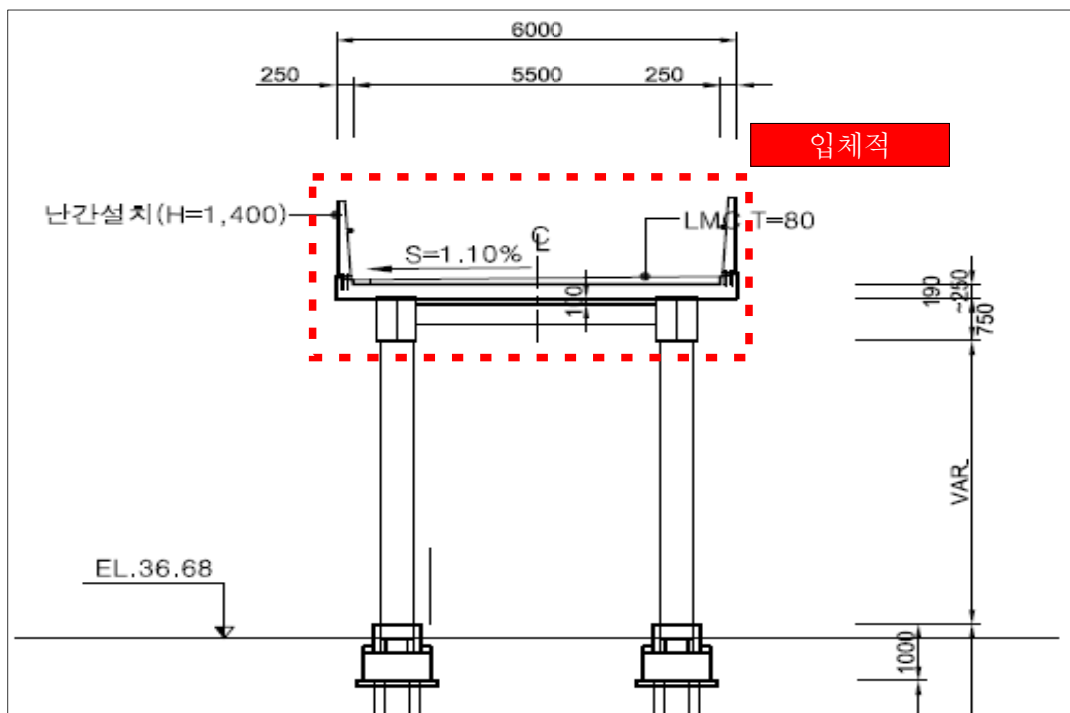
○ 평면도(연결통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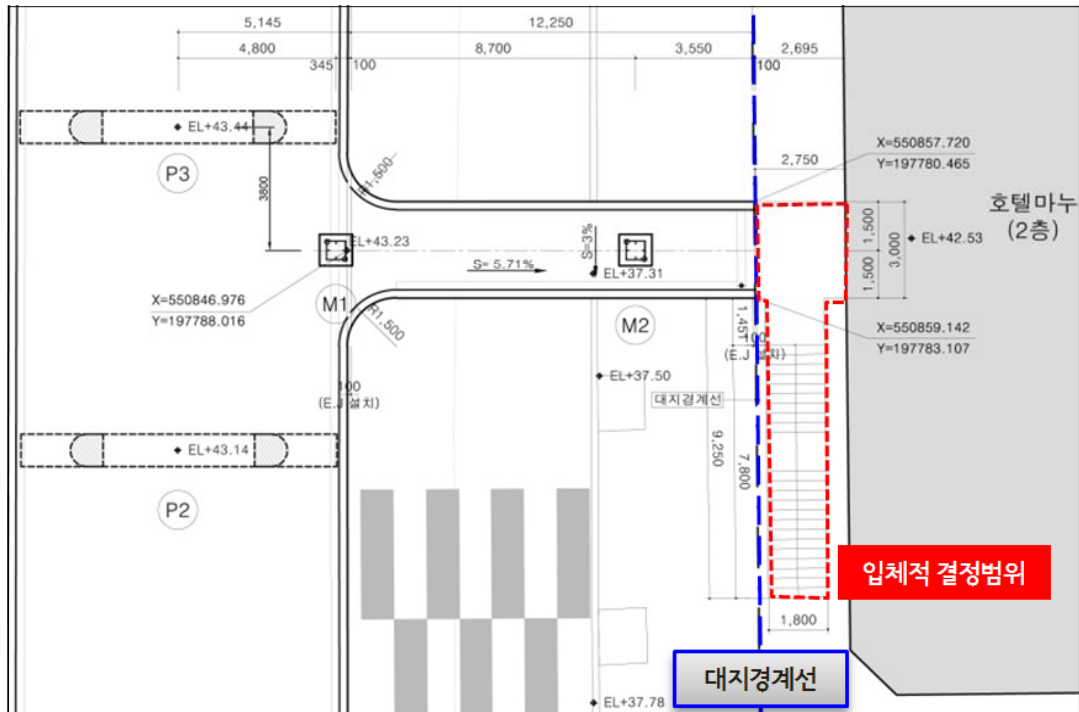
○ 단면도(연결통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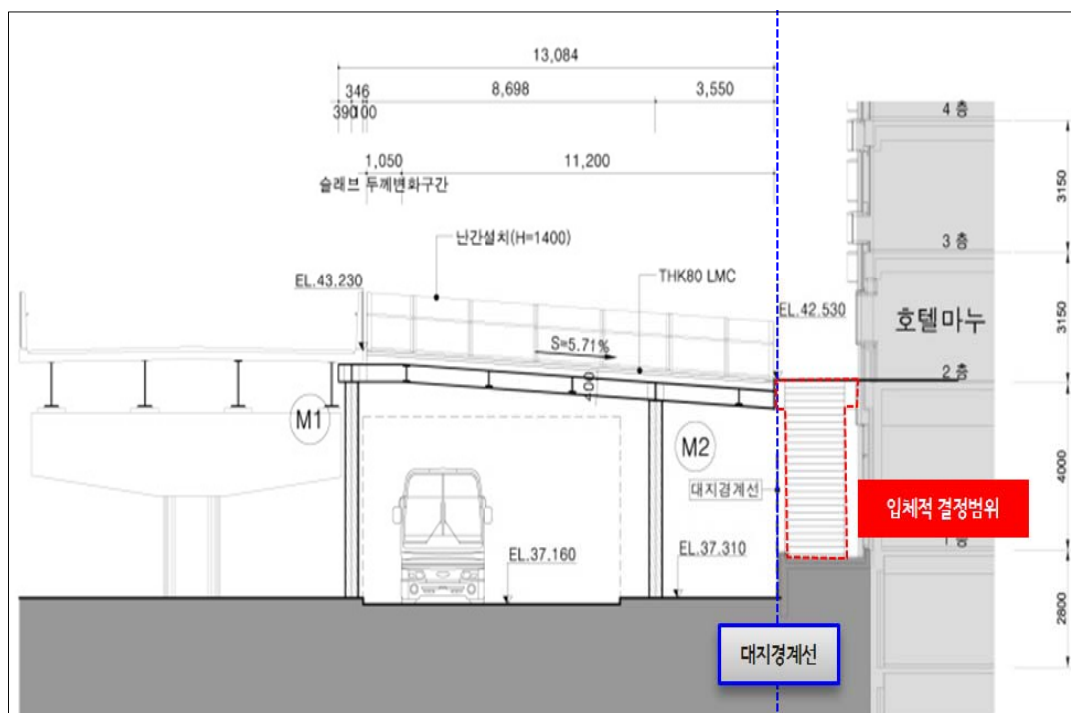
○ 횡단면도(연결통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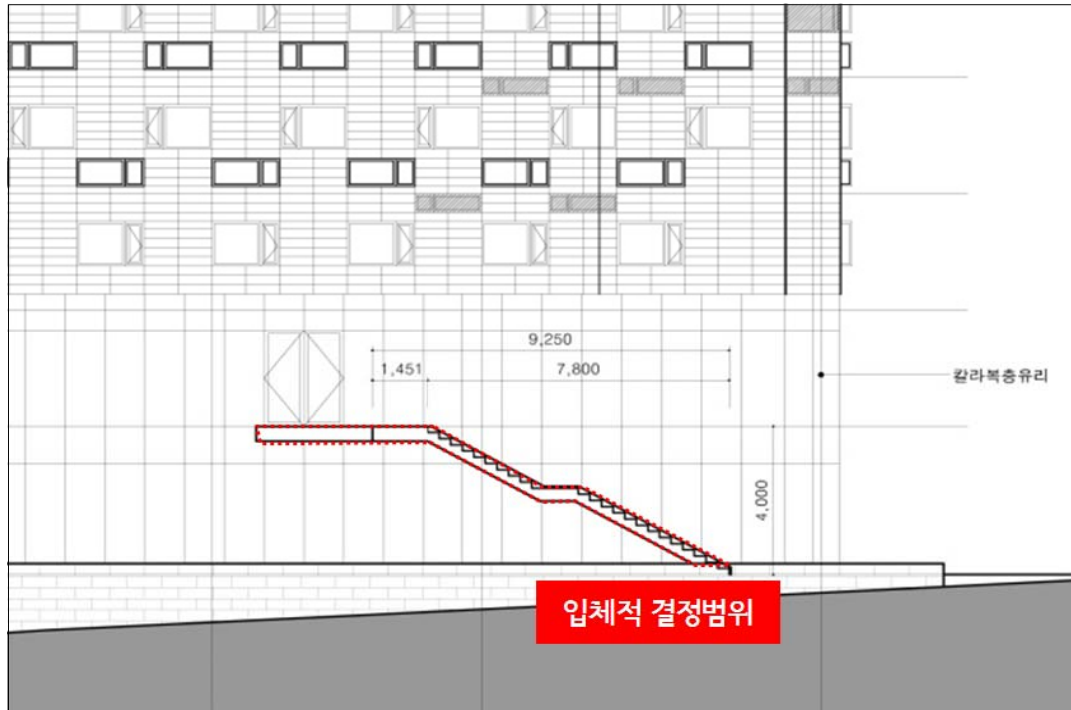
○ 평면도(연결통로2)



○ 단면도(연결통로2)



○ 입면도(연결통로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1974.5.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96호(2016.4.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54호(2016.6.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증개축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시설결정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연세대학교)	전체 (A+B)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859,425.8	-	859,425.8	서고시 제61호 (1974.5.14.)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A 구역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752,720.8	-	752,720.8		
		B 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7번지 일대	106,705.0	-	106,705.0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역	구분	면적 (㎡)	구역	구분	면적 (㎡)
상징경관구역	①	80,338.8	일반관리구역	⑦	102,177
소 계		80,338.8		⑧	54,383
외부활동구역	②	3,516		⑨	42,000
	③	34,151		⑩	19,150
	④	11,078		⑪	111,583
	⑤	6,250		⑫	87,001
소 계		54,995		⑬	52,448
녹지보존구역	⑥	40,667		⑭	89,609
	⑦	112,653			
	⑧	8,658			
	⑨	1,575			
	⑩	2,188			
소 계		165,741	소 계		558,351
합 계					859,425.8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 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A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89.6	60.00	27.0	27.0	35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비오톱1등급지: 99,777㎡ ※ 산정기준 면적 계산(㎡) 859,425.8-99,777=759,648.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87,668.2	3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5,786.0	60.00				
	소 계	652,943.8	46.78				
B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06,705.0	30.00	15.2	15.2	26	
	소 계	106,705.0	30.00				
합 계		759,648.8	44.43	25.37	25.36	34	

※ 학교용지면적(859,425.8㎡)대비 법정건폐율39.3%, 사용건폐율(변경)22.4%

※ 기정사용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54호(2016.6.2.)의 변경(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3) 구역별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높이(m)	비고
	법정용 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197.96	50.90	50.90	50.90	-142.96	55	●지표로부터 최대 24~32m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백양로(폭원 21m) 건축행위 불가	상징경관구역
②	200.00	4.03	4.03	41.64	-155.00	45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③	150.00	0.00	0.00	67.33	-80.00	7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④	153.31	15.96	15.96	59.68	-93.31	60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외부활동구역
⑤	174.40	0.00	0.00	0.00	-174.40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추가 건축시 별도 심의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28,779.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⑥	150.00	0.00	0.00	0.00	-150.00	-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69,422.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⑦	172.07	133.86	133.86	156.98	-	160	●지표로부터 최대 28~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구역 구분	용적률(%)						높이(m)	비고
	법정용 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⑧	184.48	159.81	159.81	174.91	—	18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6~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⑨	178.66	113.88	113.88	113.88	—	12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검토구역 해당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20~32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⑩	200.00	71.78	47.54	47.54	—	55	●지표로부터 최대 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⑪	184.11	297.99	297.99	309.05	+125.89	310	●지표로부터 최대 16~70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140,468㎡)
⑫	165.21	77.11	72.68	196.85	+34.79	20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2~55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30,268㎡)
⑬	150.00	125.67	122.41	122.41	—	130	●지표로부터 최대 20~40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⑭	150.00	0.00	0.00	0.00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⑮	150.00	71.29	71.29	86.82	—	90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⑯	150.00	0.00	0.00	0.00	-150.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⑰	200.00	0.00	0.00	0.00	-20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1,575㎡, 용 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⑱	150.00	0.00	0.00	0.00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 ⑤구역 밀도산정면적 : $40,667\text{㎡} - 28,779.5\text{㎡} = 11,887.5\text{㎡}$, ⑥구역 밀도산정면적 : $112,653\text{㎡} - 69,422.5\text{㎡} = 43,230.5\text{㎡}$,
⑰구역 밀도산정면적 : $1,575\text{㎡} - 1,575\text{㎡} = 0\text{㎡}$

(4) 변경건축물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⑩ 구 역	제중 학사	2,731.26	2,574.63	343.69	381.48	-	-	29,407.91	26,042.90	4,007.97	3,659.55	-	-	16,057.69	14,399.75	2,386.86	2,337.32	-	-	7(3)	7(3)	기결정 건물 경미한 변경결정 * 서울시고시 제2013-53 (2013.2.28.)
소 계		2,731.26	2,574.63	343.69	381.48	-	-	29,407.91	26,042.90	4,007.97	3,659.55	-	-	16,057.69	14,399.75	2,386.86	2,337.32	-	-	7(3)	7(3)	
		합 118.84						합 3,713.43						합 1,707.48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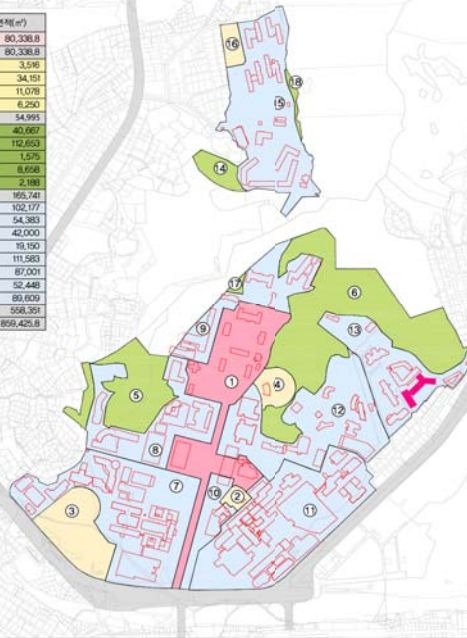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2)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전화 330-1588)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변경없음]

■ 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영역	면적	영역	면적(㎡)
상징경관	1	백암로	80,308.8	
	2	소계	80,308.8	
	3	공해청	3,518	
	4	대문동상	34,151	
	5	노천극장	11,078	
외부활동	6	태니스장	6,250	
	7	소계	54,995	
	8	A형 시책녹지대	40,065	
	9	A형 시책녹지대	112,653	
	10	A형 시책녹지대	1,575	
녹지보존	11	B형 시책녹지대	8,658	
	12	C형 시책녹지대	2,188	
	13	소계	10,846	
	14	공해청	102,177	
	15	백암로	54,383	
일반관리	16	입문로	42,000	
	17	백두산 기념관	19,150	
	18	외로담	111,580	
	19	상남강명관	87,001	
	20	재중학사	52,448	
관리	21	무악학사	89,609	
	22	소계	556,351	
	23	합계	859,4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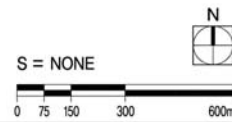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구역계획도

■ 범례 (LEGEND)

- 상징경관구역
- 외부활동구역
- 녹지보존구역
- 일반관리구역
- 현황건축물
- 변경건축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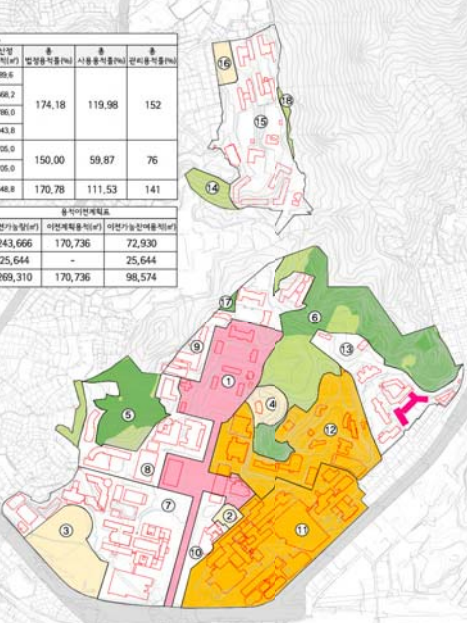
■ 캠퍼스 총괄표

영역	구분	총면적(㎡)	상징경관 비율(%)	밀도인정 비율(%)	합계	용적률 비율(%)	합계
A 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1,792.6	12.303.0	48.488.6			
	제2종일반주거지역	364,130.2	76.402.0	287,688.2	174.18	119.98	1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26,798.0	11,012.0	315,786.0			
	소계	752,720.8	99,777.0	653,943.8			
	제4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150.00	59.87	76
B 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소계	213,410.0	0.0	213,4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소계	213,410.0	0.0	213,410.0			
합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859,425.8	99,777.0	759,648.8	170.78	111.53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4종일반주거지역						
	소계						

영역	구분	총면적(㎡)	상징경관 비율(%)	밀도인정 비율(%)	합계	용적률 비율(%)	합계
A 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1,792.6	12.303.0	48.488.6			
	제2종일반주거지역	364,130.2	76.402.0	287,688.2	174.18	119.98	1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26,798.0	11,012.0	315,786.0			
	소계	752,720.8	99,777.0	653,943.8			
	제4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150.00	59.87	76
B 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소계	213,410.0	0.0	213,4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소계	213,410.0	0.0	213,410.0			
합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859,425.8	99,777.0	759,648.8	170.78	111.53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4종일반주거지역						
	소계						

영역	구분	총면적(㎡)	상징경관 비율(%)	밀도인정 비율(%)	합계	용적률 비율(%)	합계
A 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1,792.6	12.303.0	48.488.6			
	제2종일반주거지역	364,130.2	76.402.0	287,688.2	174.18	119.98	1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26,798.0	11,012.0	315,786.0			
	소계	752,720.8	99,777.0	653,943.8			
	제4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150.00	59.87	76
B 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소계	213,410.0	0.0	213,4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705.0	0.0	106,705.0			
	소계	213,410.0	0.0	213,410.0			
합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859,425.8	99,777.0	759,648.8	170.78	111.53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4종일반주거지역						
	소계						

※ 높이계획의 경우 구역 내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높이가 상이하여 실제 적용높이는 별도의 높이계획도를 참조 할 것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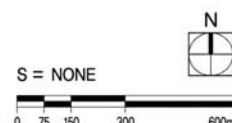
밀도계획도

■ 범례 (LEG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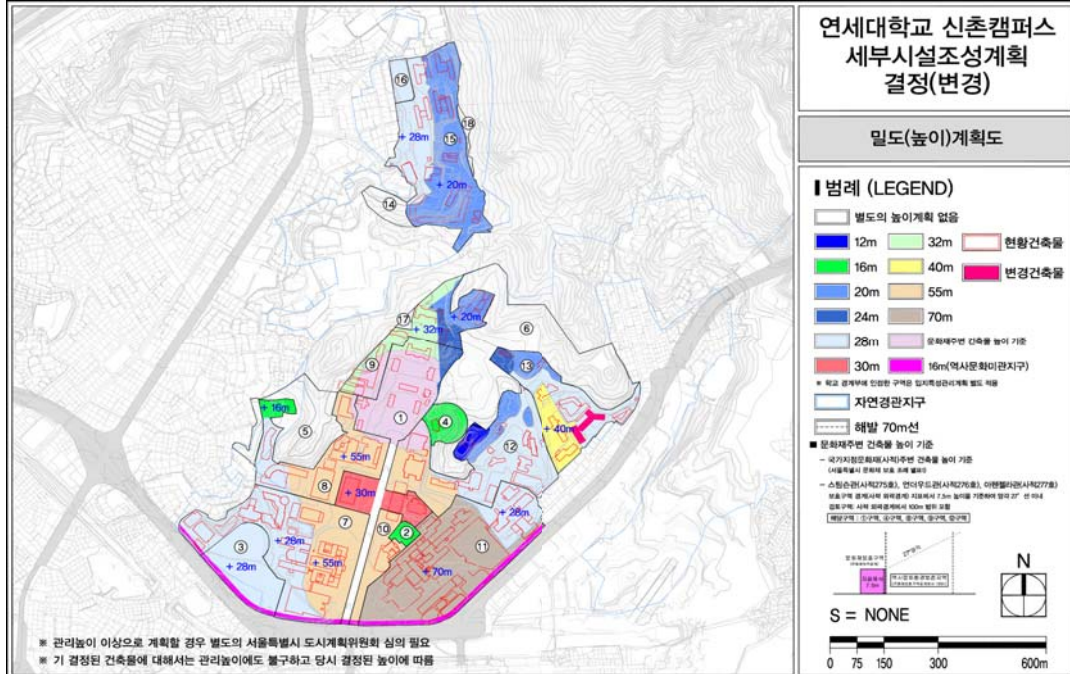
- 용적률 초과관리구역
- 비오름 1등급지
- 상징경관구역
- 외부활동구역
- 녹지보존구역
- 현황건축물
- 변경건축물

밀도관리에 관한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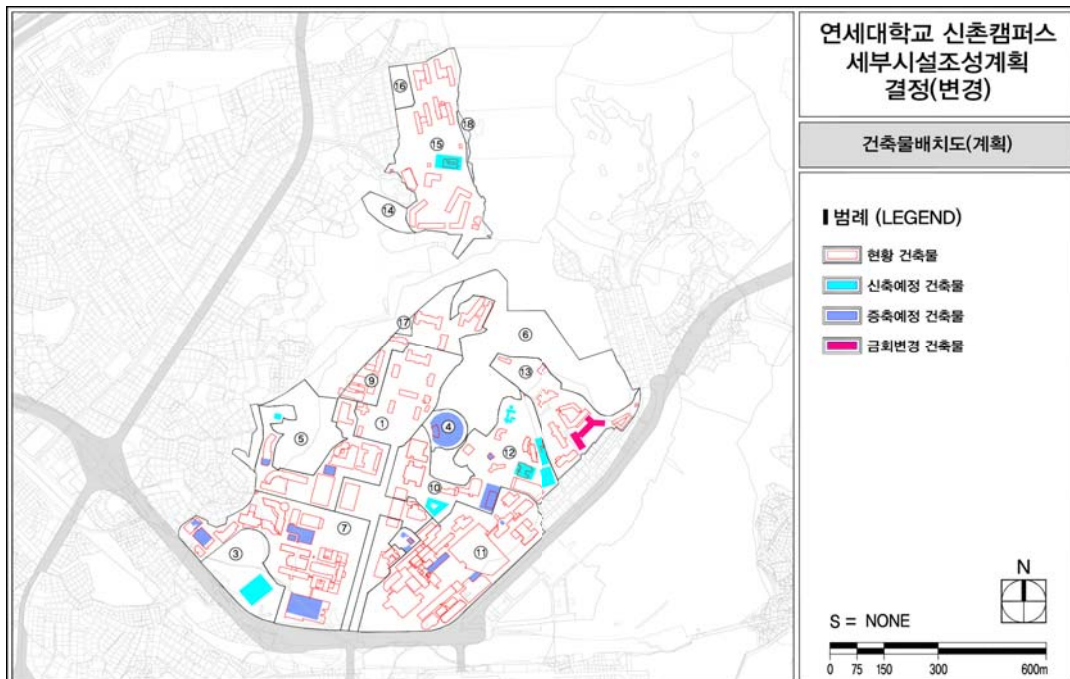
구역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5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85	(사)평화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대표 이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99-1	○ 반헌법행위 학술연구 및 사료편찬, 시민대상 캠페인 등	100 (현금)	전국	'16.9.1. ~'17.8.31.
						'16.9.1. ~'18.8.31.
2016-86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통일재단 (대표 김원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1108호	○ 재증 탈북민2세 고아보육사업 및 한 반도 평화통일 관련 축제 개최	997 (현금)	국내외 국외	'16.9.1. ~'17.8.31.
						'16.9.1. ~'18.8.31.
2016-87	사단법인 두루 (대표 김지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9층	○ 공익법률지원(공익소송, 법률자문, 상담 등) 및 공익법 활성화, 공익 변호사 양성	100 (현금)	전국	'16.9.1. ~'17.8.31.
						'16.9.1. ~'18.8.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5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83	재단법인 푸르메 (대표 강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4층	○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대상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100 (현금)	전국	'16.8.24. ~'17.8.23.
						'16.8.24. ~'18.8.23.
2016-84	사단법인 풀잠 (대표 조현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9, 상가동 304호	○ 사회활동가, 비정규노동자 등을 위한 쉼터 마련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16.8.24. ~'17.8.23.
						'16.10.1. ~'17.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5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8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 이경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55 전법회관 6층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300 (현금 및 물품)	전국	'16.8.19. ~'17.8.18.
						'16.8.19. ~'18.8.18.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20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소방시설업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일
제 서초2004-3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대한방재산업 (박정열)	서초구 논현로 7	2016. 9. 5. (개인)
제 영등포2014-1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지이앤씨 (홍천화)	영등포구 영신로 220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402호	2016. 9. 5.
제2016-02-00332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더좋은이앤지 주식회사 (김종덕)	영등포구 도신로58길 24-1	2016. 9. 6.
제 구로1999-15호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전기)	(주)유일컨설팅 (장춘식)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2016. 9. 8.
제 관악2003-3호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	(주)유성기술단 (이종택)	관악구 봉천로 411-1	2016.9.11.
제 중랑2012-1호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	월드기술단 (강광신)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23	2016.9.12. (개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25호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와 관련 임시급수보증금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도록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1. 공고내용 :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불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소재지, 금액 등을 확인하여 반환청구 하실 수 있으며,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시에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과 지출담당 (☎3146-2623)

[붙임]

임시급수보증금 반환 내역					
연번	폐전일자	반환대상자	임시급수 소재지	금액(원)	비고
1	2012.12.24.	대림산업/ 대한통운 망우출장소	중랑구 상봉1동 53	422,730	
2	2010.10.07	김동수	동대문구 장안2동 365-4	615,171	
3	2010.06.18	동혁종합건설	동대문구 용두1동 65-24	1,261,89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3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 예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보유단체	인정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서울맹인독경	(사)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채수옥	남	1940.10.10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채수옥은 서울맹인독경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서울맹인독경의 연행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능숙하여 탁월한 전승자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서울맹인독경의 전승에 대한 의지도 강하여 서울맹인독경의 전승과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맹인독경의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 ① 전화 : (02)2133-2616(오문선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3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보관일자	채 주	예치사유(적요)	귀속대상금액(원)	비 고
1	2000. 9.27.	중부아스콘 복수사무실	종로구 구기동 139-19 임시급수보증금	금528,820원	폐전일 : 2009. 8.31 (5년이상 경과)

5. 송달내용

당사자에게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부수도사업소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출담당 (☎ 02-3146-201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43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를 하고 이 사실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9.29.~2016.10.13.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강산그린건설 한국남	건축공사업 01-3576	서울시 구로구 중양로 60, 202호 (강산메디칼프라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법 제10조	영업정지5개월 (2016.10.21. ~ 2017.3.20.)	법 제83조 제3호

3.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4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황영수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220번길 10, *동 ***호 (석남동)	일시: 2016-07-11 05:42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3.65t 초과	처분일: 2016. 8. 26.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6. 10. 31.
김한석	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111번길 20, *동 ***호 (가정동)	일시: 2016-07-13 15:04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35t 초과, 3회	처분일: 2016. 8. 26.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6. 10. 31.
이병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5번길 * (용원동)	일시: 2016-08-04 05:06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86m 초과	처분일: 2016. 8. 26.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6. 10. 31.
김광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1057-1, *동 ***호 (금왕읍, 영풍아파트)	일시: 2016-08-05 06:41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6. 8.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10.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신익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3길 ** (와동)	일시: 2016-03-15 15:49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25m 초과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8. 31.
김지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2번길 6, *동, ***호 (만수동, 삼성홈타운)	일시: 2016-03-18 10:15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24m 초과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8. 31.
박기태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561번길 ***-*** (문학동)	일시: 2016-05-09 05:46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95t 초과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8. 31.
성현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174번길 *-** (만석동)	일시: 2016-05-14 09:07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36t 초과, 3회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6. 8. 31.
전호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3길 **, ***호 (방학동)	일시: 2016-05-27 05:50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17m 초과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8. 31.
김광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117번길 3-**, ***호 (행신동)	일시: 2016-05-29 14:30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51t 초과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8. 31.
박재학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20-21, ***동 ***호 (광탄면, 동신라메르아파트)	일시: 2016-05-30 07:05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51t 초과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8. 31.
석두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301번길 **, ***호 (춘의동)	일시: 2016-05-30 10:37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55t 초과	처분일: 2016. 6. 27.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6. 8.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6.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46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를 하고 이 사실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 9. 29. ~ 2016. 10. 13.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해정처분	이행사항	처분법규
제이엠 월드 (주) 서장원	건축 공사업 01-0561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길 25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 명령	건설업등록사항에 관한신고(주기적 신고)를 2016.10.21.(금)까지 이행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접수)하시고 접수필증을 우리시(시설안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81조 제2호

3. 위 이행사항(시정명령이나 지시)을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 (02) 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5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한성대학교)**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00호(1994.9.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4호(2013.8.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일대 한성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구역별 관리계획 :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1, fax : 2133-0739)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66, fax : 2241-6556)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교	대 학 (한성대학교)	전 체		39,310.9	-	39,310.9	서울시 고시 제1994-300호 (1994. 9.14)	
		제1캠퍼스	성북구 삼선동2가 389일대	38,869.7	-	38,869.7		
		제2캠퍼스	성북구 삼선동2가 388일대	441.2	-	441.2		

o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 관리(7개로 결정) (건축, 녹지, 조경, 도로, 주차장, 광장, 운동장) · 건축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 구역별 높이 · 밀도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서울시교육청고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6-7호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고시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16.9.9.)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천원)

과 목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증감률
장	관				
합 계		435,175,300	8,132,962,720	8,568,138,020	5.4%
이전수입	소계	410,500,073	7,241,554,148	7,652,054,221	5.7%
	중앙정부이전수입	364,953,694	4,646,652,055	5,011,605,749	7.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186,546	2,589,627,599	2,629,814,145	1.6%
	기타이전수입	5,359,833	5,274,494	10,634,327	101.6%
자체수입	소계	26,787,442	149,127,224	175,914,666	18.0%
	교수-학습활동수입	2,867,161	130,402,875	133,270,036	2.2%
	행정활동수입	△154,394	5,300,381	5,145,987	△2.9%
	자산수입	7,930,527	752,646	8,683,173	1053.7%
	이자수입	2,472,315	3,074,743	5,547,058	80.4%
	금융자산회수	0	5,000	5,000	0.0%
	기타수입	13,671,833	9,591,579	23,263,412	142.5%
차입	소계	△2,112,215	423,177,348	421,065,133	△0.5%
	지방교육채	△2,112,215	423,177,348	421,065,133	△0.5%
기타	소계	0	319,104,000	319,104,000	0.0%
	전년도이월금	0	319,104,000	319,104,000	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증감률
합 계	435,175,300	8,132,962,720	8,568,138,020	5.4%
1. 유아및초중등교육	415,935,211	7,828,582,687	8,244,517,898	5.3%
가. 인적자원운용	△33,926,746	4,277,473,615	4,243,546,869	△0.8%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81,562,590	282,116,592	363,679,182	28.9%

구 분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증감률
다. 교육복지지원	252,189,919	735,577,701	987,767,620	34.3%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38,677,027	323,909,641	362,586,668	11.9%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0,261,348	1,752,782,965	1,742,521,617	△0.6%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7,693,769	456,722,173	544,415,942	19.2%
2. 평생·직업교육	4,175,821	20,137,300	24,313,121	20.7%
가. 평생교육	4,175,821	18,192,200	22,368,021	23.0%
나. 직업교육	0	1,945,100	1,945,100	0.0%
3. 교육일반	15,064,268	284,242,733	299,307,001	5.3%
가. 교육행정일반	10,290,199	49,092,725	59,382,924	21.0%
나. 기관운영관리	1,504,055	45,100,994	46,605,049	3.3%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77,164	182,306,176	183,083,340	0.4%
라. 예비비및기타	2,492,850	7,742,838	10,235,688	32.2%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6-10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고시 제2004-87호(2004.12.10.)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3-2번지 일원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종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주차장 부지 중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제척하여 부지를 정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이화동 13-2번지의 4필지	1,846.8	감) 91.3	1,755.5	종로구고시 제2004-87호 (2004.12.10.)	

☐ 주차장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1,846.8㎡→1,755.5㎡ (감 91.3㎡)	이화동 13-2번지의 4필지 주차장 부지 중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제척하여 부지를 정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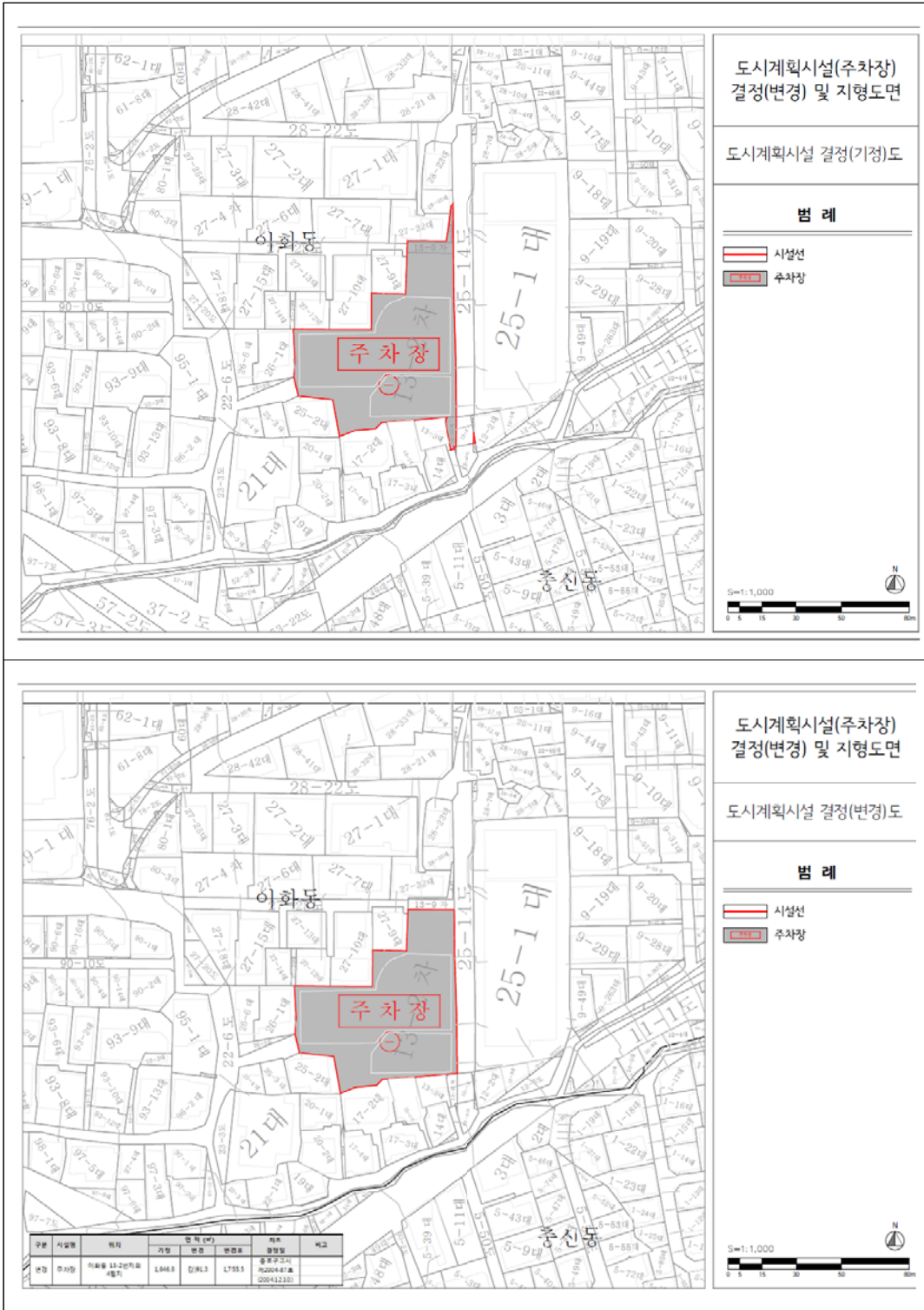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3) 및 주차관리과(☎2148-33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중구고시 제2016-85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0호(2006.12.28)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5호(2014.11.27)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09.06.)를 통해 의결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중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중구 을지로2가 199-13번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물 배치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건축물 배치계획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비고
폐지	건축지정선	• 을지로2가 199-13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주변 가로활성화	-

※ 변경대상지에 한하여 기재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을지로2가 199-13번지	• 건축지정선(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폐지	• 당초 근현대 역사문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이면가로 결절부 보행공간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지정선 결정하였으나, 대상지에만 건축지정선이 결정되어 건축지정선 결정에 따른 계획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변 건축물들은 도로변으로 접하여 있어, 명동지구 단위계획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이면가로 경관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도 건축지정선이 불합리하고 주변 대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지정선 폐지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은평구고시 제2016-81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05)로 구역결정 및 은평구공고 제1998-68호(1998.03.2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03.0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된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응암동 599-2 외 2필지의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09.22.)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선택적 공동개발 토지를(3필지) 공동개발(지정)로 계획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임.

나.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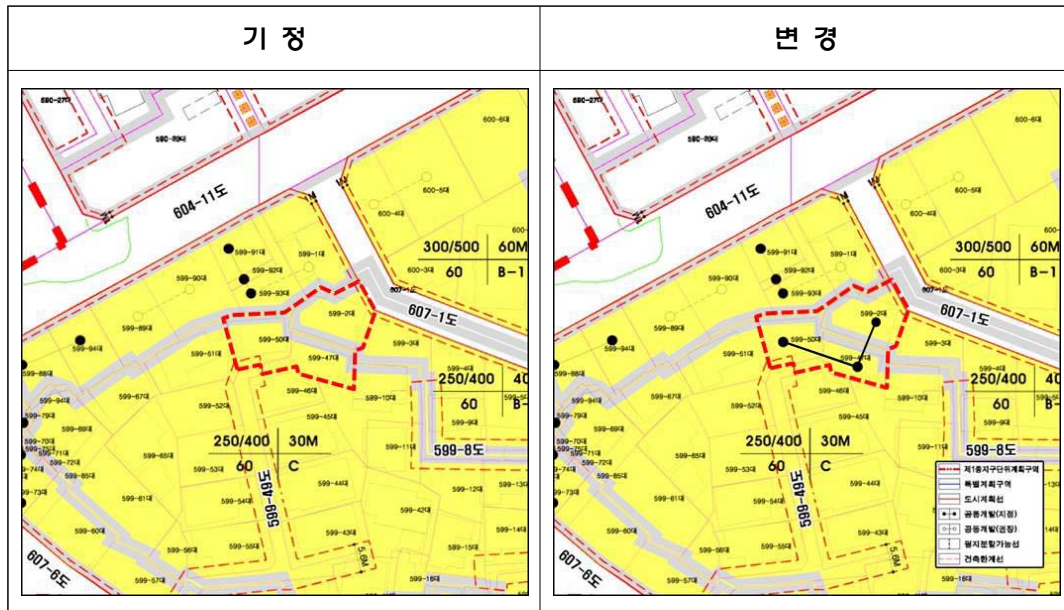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5	응암동 599-2	152.4	• 선택적 공동개발
			응암동 599-47	109.8	• 선택적 공동개발
			응암동 599-50	114.0	• 선택적 공동개발
변경	-	5	응암동 599-2	376.2	• 공동개발 지정
			응암동 599-47		
			응암동 599-50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은평구고시 제2016-8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도시자연공원과,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6-563호(2016.5.12.)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봉산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0-9번지 일대
- 2)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산131-8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보상 12,743㎡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 2016.12.31. 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정정고시 사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중 갈현동 산131-8번지를 누락 고시하여 추가 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40,802	12,743						
구산동 산136-5	임	33,159	5,100	서울 은평구 구산동 465-12 유진연립 에이동103호	차봉*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0	황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	한충*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4	심형*				
				서울 구산동 308-98	변수*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132	김정*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132	박봉*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석*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성*				
				서울 은평구 통일로82나길 9,401호(불 광동, 우성빌라)	김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갈현동 산131-22	임	190	19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갈현동 산131-8	임	7,453	7,45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 강서구고시 제2016-8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 (폐지)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하고 존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도로)을 폐지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	6	일반 도로	100	방화동 184-2일대	방화동 184-11일대	-		1976.8.16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2600-638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6-82호

도시계획시설(펑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9호(1997. 2. 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16-46호(2016. 6.23)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 펑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6-1085호(2016. 9. 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펑고개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36-8번지 외 4필지

다.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라. 변 경 내 용 : 사업규모 변경

마. 사업의 규모

- 1) 당초 : 1,800㎡, 분묘 8기, 비석 1기
- 2) 변경 : 1,800㎡, 분묘 10기, 비석 1기

바.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사무수임자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사.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자.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83)로 문의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성명	주 소
합계	2필지		1,800	1,800						1,800	1,800							
1	방화동 산136-8	임야	900	900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0길 13-1, 402호	김용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0길 13-1, 402호	김용구					보증 금액 없음	
2	방화동 산130-4	임야	900	900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2길 29	이화생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2길 29	이화생					보증 금액 없음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권순직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권순직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1/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이태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1/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이태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 물건조서 : 분묘 등

연번	지번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물건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연 고 자		물건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연 고 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방화동 산136-8	임야	분묘	2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9, 2730동 1001호	권혁준	분묘	2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9, 2730동 1001호	권혁준	변동없음
2	방화동 산136-8	임야	분묘	2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금남화로 24가길 19	이상철	분묘	2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금남화로 24가길 19	이상철	변동없음
3	방화동 산136-8	임야	분묘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분묘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변동없음
4	방화동 산136-8	임야	비석(석재)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비석(석재)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변동없음
5	방화동 산136-3	임야	분묘	2기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39, 307동 1101호	유선용	분묘	2기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39, 307동 1101호	유선용	변동없음
6	방화동 산136-6	임야	분묘	1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741	강보구	분묘	1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741	강보구	변동없음
7	방화동 산135-1	임야					분묘	2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741	강보구	추가편입

◆ 구로구고시 제2016-1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호(1974.01.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 2016-132호(2016.08.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구로구공고 제2016-1085호(2016.9.08)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 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3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가각정비 A=8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척동 243-2	학교 용지	8	8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종로구 송월길48(신문로2가)				243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자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척동 243-2	담장	조적조	1식	담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종로구 송월길48 (신문로2가)				243
		웬스	메쉬,철재	1식	웬스						

◆ 동작구고시 제2016-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29호(2016.3.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작구 노량진동40-17번지 일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596)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노량진동42-18~16-3간 도로(입체결정 및 기존 지하보도 출입구 신설 포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칭 :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
(노량진 드림스퀘어복합빌딩 신축관련 지하횡단보도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지하보도)개설 : 폭 6~9m, 연장 75m
- 도로(입체결정) : 폭 6~9m, 연장 30m
- 기존 지하보도 출입구 신설 : 폭 6m, 연장 2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 인 명 칭 : 드림스퀘어
- 법인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호 외 5필지
- 대표자성명 : 김현숙 외 108명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6년 10월

-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동작구청)에 무상 기부채납

- 건물내 입체결정 부분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저층 토지부분에 대해 구분 지상권 설정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자 : 드림스퀘어(김현숙 외 1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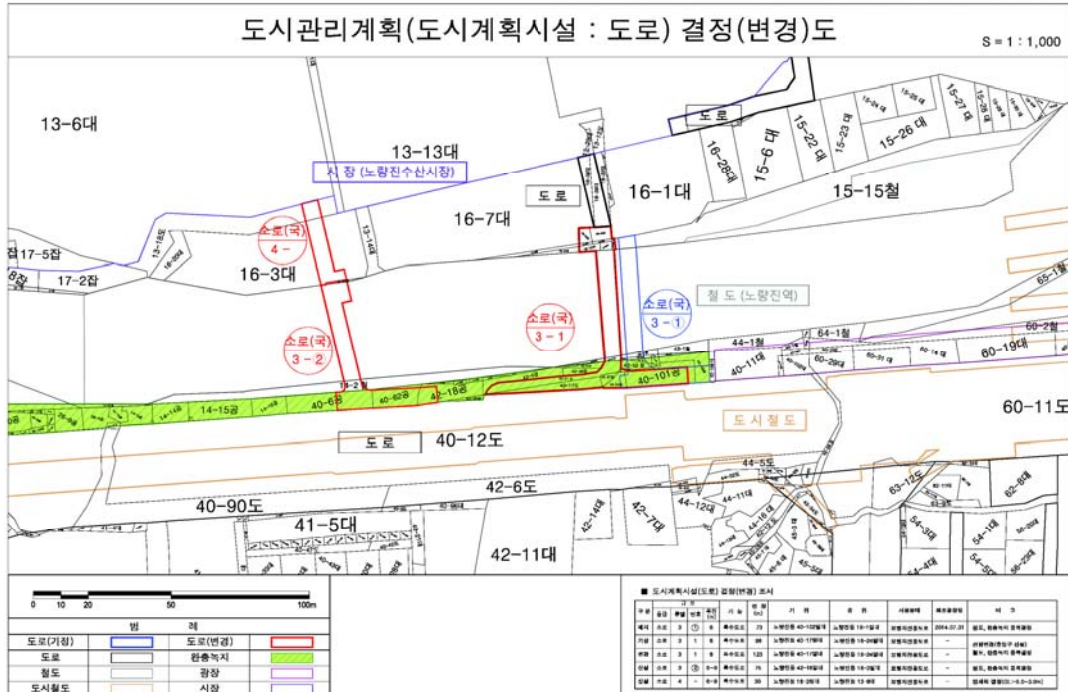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호 외 5필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 분		주 소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 고
지 하 형 단 보 도	①	동작구 노량진동	40-6	공원	226.0	85.7	서울특별시	-	완충녹지
	②	동작구 노량진동	40-62	공원	109.0	108.1	서울특별시	-	
	③	동작구 노량진동	42-18	공원	149.0	41.9	서울특별시	-	
	④	동작구 노량진동	14-2	철도	439.0	26.8	국(국토교통부)	-	철도
	⑤	동작구 노량진동	14-37	철도	45,908.0	243.8	국(국토교통부)	-	
	⑥	동작구 노량진동	16-32	철도	12.0	4.7	국(국토교통부)	-	
	소 계				46,843.0	511.0			
신 설 출 입 구	⑦	동작구 노량진동	40-54	공원	27.0	27.0	서울특별시	-	완충녹지
	⑧	동작구 노량진동	40-101	공원	178.0	137.2	서울특별시	-	
	⑨	동작구 노량진동	42-22	대지	10.0	2.0	국(국토교통부)	-	
	⑩	동작구 노량진동	42-33	잡종지	2.0	2.0	국(국토교통부)	-	
소 계					217.0	168.2			
입 체 적 결 정	⑪	동작구 노량진동	16-3	대지	1505.0	156.1	김현숙 외 108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비락 새마을금고 케이미트 이복임 김주홍 김경숙 윤종기	
	⑫	동작구 노량진동	13-18	도로	558.0	38.9	에코폴리탄	새마을금고	
	소 계				2,063.0	195.0			
총 계 (지하형단보도+신설출입구+신축건물)					49,123.0	8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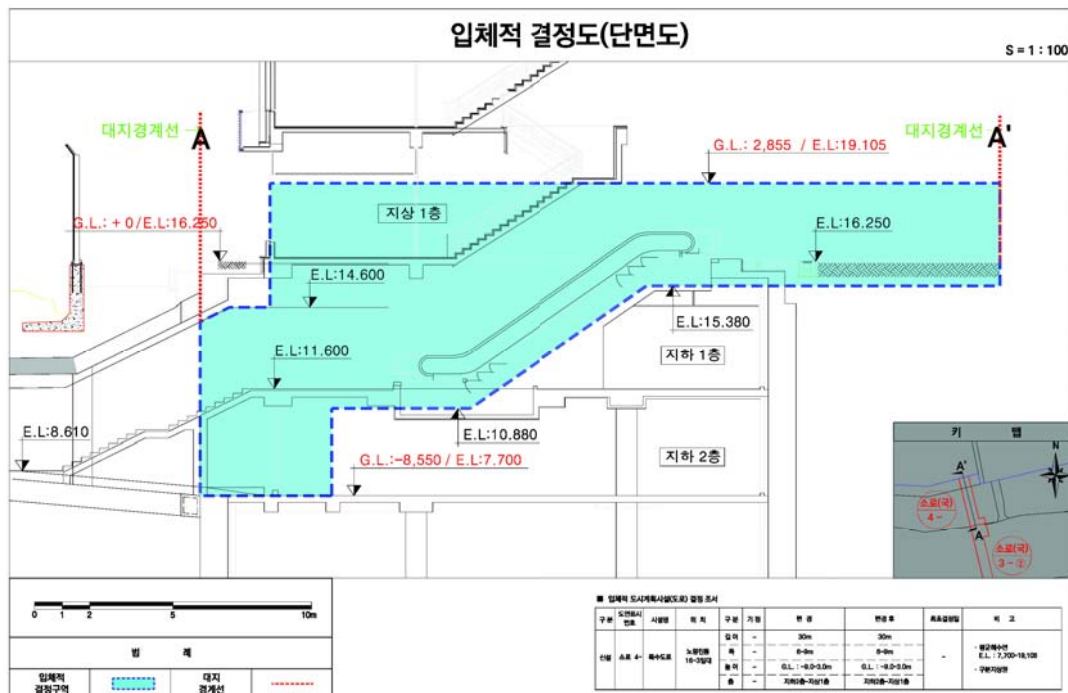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도



입체결정 단면도

입체적 결정도(단면도)



◆ 서초구고시 제2016-92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76호(1982.0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3호(2016.06.02.)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주차장)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주차장)사업을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주차장) 사업
- 명칭 : 양재근린공원 내 지하 저류시설 및 주차장 건설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도시계획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저류시설, 주차장	
대지면적	주차장 4,150㎡, 저류시설 3,300㎡	
건축규모	지하 2층	

구분	주차장		저류시설	비 고
	지상	지하1층	지하2층	
폭	20.0m	60.0m	60.0m	
연장	27.5m	60.0m	55.0m	
높이	-	3.2m	5.0m	
면적	550㎡	3,600㎡	3,300㎡	
저류용량	-		12,850㎡	
주차면수	102면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초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7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서(해당사항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134,7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6-129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35호(2007.11.29.)로 결정된 강남구 율현동 98-3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폐지)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강남구 율현동 98-3 일원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이 세곡2 공공주택지구내 방수설비용지로 이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어져 폐지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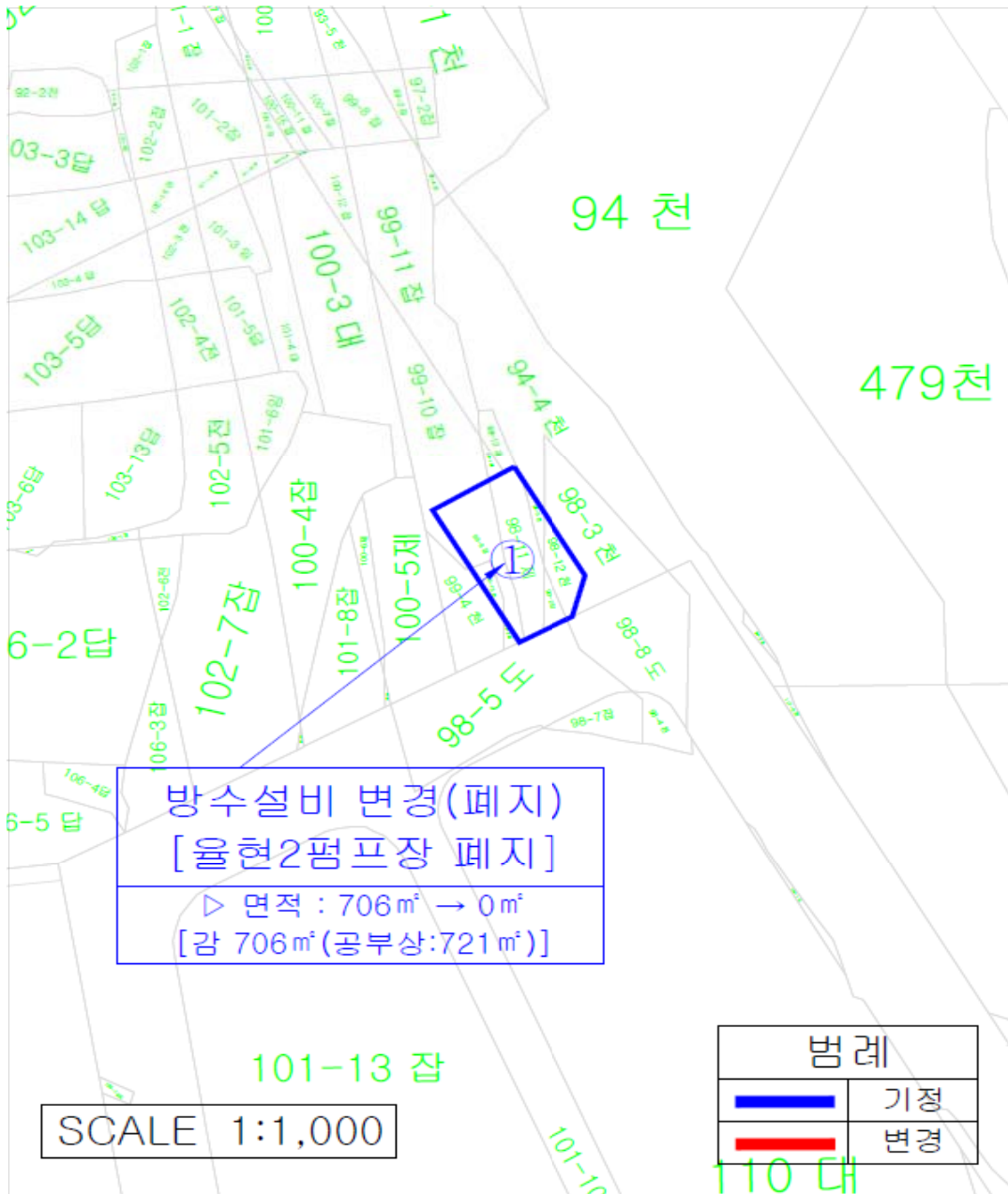
나.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폐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98-3 일원	706	감)706	0	2007.11.29. (서고2007-435호)

다. 관련도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05) 비치도면과 같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폐지) 결정도 >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16-95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38호(19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87호(2016.7.7)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조성계획 변경(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산2-1번지 일대(오동근린공원)

나. 오동근린공원 면적 : 1,532,959.4㎡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월곡청소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1463.28㎡
- 주요시설 : 열람실,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컴퓨터실 등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5)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 : 강북구 번동 산28-6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1,532,959.4	352,076	25	19,232.01	43,986.92	138	1,532,959.4	352,076	25	19,126.46	43,938.2	138	25				105.55㎡(바닥) 감)48.72㎡(연면)													
	소 계	133,620	108,774					133,620	108,774																						
	도 로	113,040	88,152					113,040	88,152																						
	오동교	200	200					200	200																						
	광 장	20,422	20,422					20,422	20,422																						
조경시설		57,322	57,322	1	3,786.05	9,726.01	52	57,322	57,322	1	3,786.05	9,726.01	52																		
휴양시설		18,178	18,178	2	244.8	244.8	7	18,178	18,178	2	244.8	244.8	7																		
유흥시설		12,887	12,887		650	650	2	12,887	12,887		650	650	2																		
운동시설		65,323	60,893	4	6,275.76	13,039.68	75	65,323	60,893	4	6,275.76	13,039.68	75																		
교양시설		72,351	72,351	6	5,037.59	15,760.97	1	72,351	72,351	6	4,932.04	15,712.25	1					25	105.55㎡(바닥) 감)48.72㎡(연면)												
편익시설		19,389	19,122	7	2,280.41	2,783.13	1	19,389	19,122	7	2,280.41	2,783.13	1																		
관리시설		2,549	2,549	5	957.4	1,782.33		2,549	2,549	5	957.4	1,782.33																			
녹지 및 기타		1,151,379.4						1,151,379.4																							
공원시설율 (법정40%)		(352,076㎡ / 1,532,959.4㎡) × 100% = 22.97 %															(352,076㎡ / 1,532,959.4㎡) × 100% = 22.97 %														
건폐율(10%)		(19,232.01㎡ / 1,532,959.4㎡) × 100% = 1.25 %															(19,126.46㎡ / 1,532,959.4㎡) × 100% = 1.24 %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련 시설·노인복지회관·보육시설 ·운동시설율(법정 20%)		(66,337㎡ / 352,076㎡) × 100% = 18.84%															(66,337㎡ / 352,076㎡) × 100% = 18.84%														

※ 총괄표(지구별)

구 분	경 전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계	1,532,959.4	352,076	25	19,232.01	43,986.92	138	1,532,959.4	352,076	25	19,126.46	43,938.2	138	감)105.55㎡(바닥) 감)48.72㎡(연면)
“가” 지구	665,190	193,263	11	9,771.25	22,233.24	69	665,190	193,263	11	9,771.25	22,233.24	69	
“나” 지구	241,948	40,984	1	1,249	5,574	25	241,948	40,984	1	1,249	5,574	25	
“다” 지구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2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2	
“라” 지구	183,403	68,206	11	5,183.99	7,033.00	2	183,403	68,206	11	5,078.44	6,984.28	2	감)105.55㎡(바닥) 감)48.72㎡(연면)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1. “가”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바닥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665,190	193,263	11	9,771.25	22,233.24	69		665,190	193,263	11	9,771.25	22,233.24	69			
	소 계	52,077						52,077	52,077							
	도로	36,995						36,995	36,995							
	오동교	200						200	200							
	광 장	14,882						14,882	14,882							
조 경 시 설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휴 양 시 설	13,658	13,658	1	44.80	44.80	1		13,658	13,658	1	44.80	44.80	1			
유 회 시 설	1,655	1,655						1,655	1,655							
운 통 시 설	7,012	5,582				31		7,012	5,582				31			
교 양 시 설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편 의 시 설	9,632	9,632	4	2,108.41	2,415.13	1		9,632	9,632	4	2,108.41	2,415.13	1			
관 리 시 설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녹 지 / 기타	470,497							470,497								
공원시설을 (법정40%)	(193,263㎡ / 665,190㎡) × 100% = 29.05 %															(193,263㎡ / 665,190㎡) × 100% = 29.05 %
건폐율(10%)	(9,771.25㎡ / 665,190㎡) × 100% = 1.47 %															(9,771.25㎡ / 665,190㎡) × 100% = 1.47 %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운동시설을 (법정 20%)	(8,260㎡ / 193,263㎡) × 100% = 4.27 %															(8,260㎡ / 193,263㎡) × 100% = 4.27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합계			665,190	185,401	11	9,771.25	22,233.24	69			665,190	185,401		11	9,771.25	22,233.24	69	
	소계			52,077	52,077							52,077	52,077						
	도로		전지역	36,995	36,995						전지역	36,995	36,995						
	오동교		미아4동	200	200						미아4동	200	200						
		가	산35-1, 25-1	14,882	14,882					가	10개소	14,882	14,882						
		가-1	변동 산28-6, 산28-9, 29,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가-1	변동 산28-6, 산28-9, 29,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가-2	변동 92,93-2	(33)	(33)					가-2	변동 92,93-2	(33)	(33)						
		가-3	변동 산28-6	(14)	(14)					가-3	변동 산28-6	(14)	(14)						
		가-4	변동 산28-6	(300)	(300)					가-4	변동 산28-6	(300)	(300)						
		가-5	변동 산28-6, 산28-3, 120-1, 120-6, 121	(11,316)	(11,316)					가-5	변동 산28-6, 산28-3, 120-1, 120-6, 121	(11,316)	(11,316)						
조경시설	소계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월영연못	나	변동 산28-6	12,526	12,526					나	변동 산28-6	12,526	12,526						
		다	2개소	3,971	3,971					다	2개소	3,971	3,971						
	계류	다-1	변동 산28-6, 28-3	(2,829)	(2,829)					다-1	변동 산28-6, 28-3	(2,829)	(2,829)						
		다-2	변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다-2	변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칠곡연못	라	변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라	변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미러폰드	①	변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①	변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점평분수	②	변동 산28-3	386	386					②	변동 산28-3	386	386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저류지	마	변동 산28-6	467	467						마	변동 산28-6	467	467					
	야생초화원	바	변동 산28-6 산28-7	11,070	11,070						바	변동 산28-6 산28-7	11,070	11,070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사	2개소	21,664	21,664						사	2개소	21,664	21,664					
		사-1	변동 산28-6	(13,228)	(13,228)						사-1	변동 산28-6	(13,228)	(13,228)					
	사-2	변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사-2	변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창포원	아	변동 산28-6 120-1	1,167	1,167					아	변동 산28-6 120-1	1,167	1,167						
	낙수대	③	변동 산28-6	73	73					③	변동 산28-6	73	73						
	월광폭포	④	변동 산28-6	-	-	철골 인공암				1	④	변동 산28-6	-	-	철골 인공암			1	
	월광대	⑤	변동 산28-6	-	-	철골 석재				1	⑤	변동 산28-6	-	-	철골 석재			1	
	월영대	⑥	변동 산28-6	-	-	철골 석재				1	⑥	변동 산28-6	-	-	철골 석재			1	
	전통정자	⑦	변동 산28-6	-	-					2	⑦	변동 산28-6	-	-					2
		⑦-1	변동 산28-6	-	-	목재				(1)	⑦-1	변동 산28-6	-	-	목재				(1)
		⑦-2	변동 산28-6	-	-	목재				(1)	⑦-2	변동 산28-6	-	-	목재				(1)
		⑧	변동 산28-6	-	-	목재				13	⑧	변동 산28-6	-	-	목재				13
	조형 파고라	⑨	변동 산28-6	-	-	막구조				1	⑨	변동 산28-6	-	-	막구조				1
환경 조형물	⑩	변동 산28-7	-	-					10	⑩	변동 산28-7	-	-					10	
조형화분	⑪	변동 산28-10	-	-					4	⑪	변동 산28-10	-	-					4	
소 계			13,658	13,658		1	44.8	44.8	1			13,658	13,658		1	44.8	44.8	1	
휴양시설	자	11개소	2,621	2,621						자	11개소	2,621	2,621						
	자-1	변동 산28-6	(364)	(364)						자-1	변동 산28-6	(364)	(364)						
	자-2	변동 산28-6	(303)	(303)						자-2	변동 산28-6	(303)	(303)						
	자-3	변동 산28-6	(126)	(126)						자-3	변동 산28-6	(126)	(126)						
	자-4	변동 산28-10	(215)	(215)						자-4	변동 산28-10	(215)	(215)						
	자-5	변동 산28-10	(188)	(188)						자-5	변동 산28-10	(188)	(188)						
자-6	변동 산28-10	(333)	(333)						자-6	변동 산28-10	(333)	(333)							

구분	시설명	전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후암시정	휴게소	자-7	변동 산28-10		(137)	(137)						
		자-8	변동 산28-10		(545)	(545)						
		자-9	변동 산28-10		(200)	(200)						
		자-10	변동 산28-10		(80)	(80)						
		자-11	변동 산28-10		(130)	(130)						
		카	9개소		10,408	10,408						
	데크쉘터	카-1	변동 산28-6		(780)	(780)						
		카-2	변동 산28-6		(146)	(146)						
		카-3	변동 산28-6		(72)	(72)						
		카-4	변동 산28-6		(419)	(419)						
		카-5	변동 산28-6		(7,735)	(7,735)		지상 1층	44.80	44.80		
수변쉘터	수변쉘터	카-6	변동 산28-6 산28-3		(966)	(966)						
		카-7	변동 산28-10		(79)	(79)						
		카-8	변동 산35-64		(92)	(92)						
		카-9	변동 산28-3		(119)	(119)						
		타	5개소		629	629						
		타-1	변동 산28-6		(49)	(49)						
		타-2	변동 산28-6		(268)	(268)						
		타-3	변동 산28-6		(41)	(41)						
		타-4	변동 산28-6, 92		(195)	(195)						
	소 계	타-5	변동 산28-6, 628		(76)	(76)						
		⑩	전지역		-	-					1	
정 자	정 자	⑩-1	변3동 산28-10일대		(1)	(1)						(1)
		⑩-1	변3동 산28-10일대		(1)	(1)						(1)

구분	시설명	본 경 전						본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회 시 설	소 계			1,655	1,655			-					1,655	1,655				-		
	어린이 놀이터	파	3개소	1,655	1,655					파	3개소	1,655	1,655							
		파-1	변동 산28-6	(482)	(482)					파-1	변동 산28-6	(482)	(482)							
		파-2	변동 산28-1	(458)	(458)					파-2	변동 산28-1	(458)	(458)							
안 령 시 설	파-3	변동 산28-10	(715)	(715)					파-3	변동 산28-10	(715)	(715)								
	소 계			7,012	5,582				31			7,012	5,582						31	
	체 력 단 련 장	하	1개소	310	310					하	1개소	310	310							
	다 목 적 운 동 장	하-1	변동 산28-10	(310)	(310)					하-1	변동 산28-10	(310)	(310)							
		거	2개소	1,068	1,068					거	2개소	1,068	1,068							
		거-1	변동 산28-1	(491)	(491)					거-1	변동 산28-1	(491)	(491)							
		거-2	변동 산28-1	(577)	(577)					거-2	변동 산28-1	(577)	(577)							
	배 드 민 탄 장	너	5개소	2,915	2,915					너	5개소	2,915	2,915							
		너-1	변동 산28-10	(585)	(585)					너-1	변동 산28-10	(585)	(585)							
		너-2	변동 산28-10	(537)	(537)					너-2	변동 산28-10	(537)	(537)							
너-4		변3동산28-87	(519)	(519)					너-4	변3동산28-87	(519)	(519)								
족 구 장	너-5	변3동산28-8 산28-71	(426)	(426)					너-5	변3동산28-8 산28-71	(426)	(426)								
	너-6	변3동산35-65 산 28-88	(848)	(848)					너-6	변3동산35-65 산 28-88	(848)	(848)								
	더	1개소	561	561					더	1개소	561	561								
	더-1	변동 산28-68	(561)	(561)					더-1	변동 산28-68	(561)	(561)								
교 양 시 설	체 력 단 련 시설	㉓	전지역	2,158	728				31	전지역	2,158	728							31	
	소 계			51,508	51,508			3,284.59	8,674.97	1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구한옥	1	변동 93-1일대	800	800	목조	2	204.96		1	변동 93-1일대	800	800	목조	2	204.96		204.96		
	문화센터	2	변동 산28-6	4,108	4,108	철근조	지하2층 지상3층	2,707.85	7,525.64	2	변동 산28-6	4,108	4,108	철근조	지하2층 지상3층	2,707.85	7,525.64			
아 성 화 원	미술관	3	변동 산28-6	1,187	1,187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371.78	944.37		3	변동 산28-6	1,187	1,187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371.78	944.37		
	아성화원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단종식물원	더	변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더	변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회목원	머	변3동 산28-8	11,803	11,803						머	변3동 산28-8	11,803	11,803					
	무대 조형물	㉔	변동 산28-6	-	-					1	㉔	변동 산28-6	-	-				1	
	소개			9,632	9,632		4	2,108.41	2,415.13	1			9,632	9,632		4	2,108.41	2,415.13	1
	주차장	머	변동 산28-6	3,026	3,026						머	변동 산28-6	3,026	3,026					
	주차장	머	변동 산28-6	125	125						머	변동 산28-6	125	125					
편의시설	주차장	서	변동 산28-6	226	226						서	변동 산28-6	226	226					
	전망대	4	변동 산28-6	2,169	2,169	철골 철근조	지상3층	852.79	1,075.03		4	변동 산28-6	2,169	2,169	철골 철근조	지상3층	852.79	1,075.03	
	레스토랑	5	변동 산28-6	3,082	3,082	철근조	지상1층	667.39	667.39		5	변동 산28-6	3,082	3,082	철근조	지상1층	667.39	667.39	
	클래스 파빌리온	6	변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조	지하1층 지상1층	381.95	466.43		6	변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조	지하1층 지상1층	381.95	466.43	
	야외 화장실	7	변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206.28	206.28		7	변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206.28	206.28	
	경사형엘리베이터	㉕	변동 산28-6							1	㉕	변동 산28-6							1
관리시설	소계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방문자 센터	8	변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547.40	1,372.33		8	변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547.40	1,372.33	
	녹지 및 기타			470.497									470.497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2. “나”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41,948	40,984	1	1,249	5,574	25	241,948	40,984	1	1,249	5,574	25		
기 반 시 설	소 계	24,932						24,932	10,727					
	도 로	23,416	9,211					23,416	9,211					
	광 장	1,516	1,516					1,516	1,516					
	조 경 시 설	-	-				13	-	-				13	
	휴 양 시 설	641	641				2	641	641				2	
유 희 시 설	2,776	2,776					2,776	2,776						
운 동 시 설	4,632	4,632				10	4,632	4,632				10		
교 양 시 설	19,797	19,797	1	1,249	5,574		19,797	19,797	1	1,249	5,574			
편 익 시 설	2,411	2,411					2,411	2,411						
관 리 시 설	-	-					-	-						
녹지 / 기타	186,759						186,759							
공원시설율 (법정40%)	$(40,984㎡ / 241,948㎡) \times 100\% = 16.93\%$						$(40,984㎡ / 241,948㎡) \times 100\% = 16.93\%$							
건폐율(10%)	$(1,249㎡ / 241,948㎡) \times 100\% = 0.52\%$						$(1,249㎡ / 241,948㎡) \times 100\% = 0.52\%$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운동시설을 (법정 20%)	$(6,352㎡ / 40,984㎡) \times 100\% = 15.5\%$						$(6,352㎡ / 40,984㎡) \times 100\% = 15.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동)	
기 반 시 설	합 계			241,948	40,984		1	1,249	5,574	25				
	소 계			24,932	10,727									
	도로			23,416	9,211									
	광 장	가	4개소	1,516	1,516									
		가-1	번2동 산27-108일대	(318)	(318)									
		가-2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가-3	번2동 산27-8일대	(91)	(91)									
		가-4	번2동 산27-8일대	(890)	(890)									
	소 계			-	-									13
	파고라	①	전지역	-	-									13
	소 계			641	641									2
	휴게소	나	3개소	641	641									
		나-1	번2동 산27-120일대	(393)	(393)									
		나-2	번2동 산27-8일대	(90)	(90)									
		나-3	미아9동 산25-1일대	(158)	(158)									
		②	전지역											
후 양 시 설	정 자	②-1	미아9동 산25-50일대											2
		②-2	미아9동 산25-1일대											(1)
		②-3	미아9동 산25-1일대											(1)
		②-4	미아9동 산25-1일대											(1)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회 시 설	소 계	다	4개소	2,776	2,776						다	4개소	2,776	2,776						
	어린이 놀이터	다-1	미아9동 산25-43일대	(446)	(446)						다-1	미아9동 산25-43일대	(446)	(446)						
		다-2	번2동 산 27-108일대	(1,000)	(1,000)						다-2	번2동 산 27-108일대	(1,000)	(1,000)						
		다-3	번2동 산27-5일대	(950)	(950)						다-3	번2동 산27-5일대	(950)	(950)						
		다-4	미아9동 산25-28일대	(380)	(380)						다-4	미아9동 산25-28일대	(380)	(380)						
안 동 오 시 설	소 계			4,632	4,632		-	-	-	10			4,632	4,632		-	-	-	10	
	체 력 단련장	라	2개소	3,021	3,021						라	2개소	3,021	3,021						
		라-1	미아9동 산25-52일대	(2,320)	(2,320)						라-1	미아9동 산25-52일대	(2,320)	(2,320)						
		라-2	미아9동 산34-2일대	(701)	(701)						라-2	미아9동 산34-2일대	(701)	(701)						
		다목적 운동장	마	미아9동 산25-46일대	(515)	(515)						마	미아9동 산25-46일대	(515)	(515)					
	배 드 민턴장	바	번2동 산25-1일대	(1,096)	(1,096)						바	번2동 산25-1일대	(1,096)	(1,096)						
	체 력 단련시설	전지역									전지역								1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소 계			19,797	19,797		1	1,249	5,574				19,797	19,797		1	1,249	5,574		
	도서관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	1,249	5,574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	1,249	5,574		
	관목원	사	미아9동 산25-1일대	538	538						사	미아9동 산25-1일대	538	538						
	자연 학습장	아	번2동 122-55일대	921	921						아	번2동 122-55일대	921	921						
	보태닉 기든	자	번2동 122-42일대	3,888	3,888						자	번2동 122-42일대	3,888	3,888						
	생 태 습지원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편 의 시 설	소 계			2,411	2,411								2,411	2,411						
	약수터	카	번2동 123-4일대	(164)	(164)						카	번2동 123-4일대	(164)	(164)						
	주차장	타	4개소	2,247	2,247						타	4개소	2,247	2,247						
		타-1	번2동 산27-120일대	(500)	(500)						타-1	번2동 산27-120일대	(500)	(500)						
		타-2	미아9동 산25-32일대	(307)	(307)						타-2	미아9동 산25-32일대	(307)	(307)						
		타-3	번3동 산27-108일대	(940)	(940)						타-3	번3동 산27-108일대	(940)	(940)						
누지 및 기타				186,759								186,759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3. “다”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계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2	
기 반 시 설	소 계	32,272	21,589			32,272	21,589					
	도 로	31,017	20,334			31,017	20,334					
	광 장	1,255	1,255			1,255	1,255					
	조 경 시 설	-	-			-	-				4	
휴 양 시 설	1,243	1,243				1,243	1,243				4	
유 희 시 설	3,696	3,696				3,696	3,696					
운 동 시 설	21,783	18,783	2	3,027.77	9,146.68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4	
교 양 시 설	-	-				-	-					
편 의 시 설	4,579	4312				4,579	4312					
녹지 / 기타	378,845.4					378,845.4						
공원시설율 (법정40%)	(49,623㎡ / 442,418.4㎡) × 100% = 11.22 %					(49,623㎡ / 442,418.4㎡) × 100% = 11.22 %						
건폐율(10%)	(3,027.77㎡ / 442,418.4㎡) × 100% = 0.68 %					(3,027.77㎡ / 442,418.4㎡) × 100% = 0.68 %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운동시설을 (법정 20%)	(18,783㎡ / 49,623㎡) × 100% = 37.85 %					(18,783㎡ / 49,623㎡) × 100% = 37.85 %						

나. 시설 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442,418.4	49,623		2	3002.3	9,154.12	42		442,418.4	49,623		2	3002.3	9,154.12	42	
	소 계			32,235	21,589							32,235	21,589						
	도 로		전지역	31,017	20,334						전지역	31,017	20,334						
	광 장	가	4개소	1,255	1,255					가	4개소	1,255	1,255						
		가-1	번2동 148-383일대	(177)	(177)					가-1	번2동 148-383일대	(177)	(177)						
가-2		번2동 산12일대	(103)	(103)					가-2	번2동 산12일대	(103)	(103)							
조경 시설	파고라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①	전지역	-	-				4	①	전지역	-	-					4	
		소 계			1,243	1,243				4			1,243	1,243				4	
휴 양 시 설	휴게소	나	6개소	1,243	1,243					나	6개소	1,243	1,243						
		나-1	번2동 산20-1일대	(608)	(608)					나-1	번2동 산20-1일대	(608)	(608)						
		나-2	미아3동 산25-14일대	(143)	(143)					나-2	미아3동 산25-14일대	(143)	(143)						
		나-3	번2동 336-2일대	(124)	(124)					나-3	번2동 336-2일대	(124)	(124)						
		나-4	번2동 산25-2일대	(135)	(135)					나-4	번2동 산25-2일대	(135)	(135)						
		나-5	번2동 314일대	(126)	(126)					나-5	번2동 314일대	(126)	(126)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후 양 시 설	소 계	②	전지역			목재			4	②	전지역			목재			4	
	정 자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 (사각)			(1)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 (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 (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 (사각)			(1)	
		②-3	휴게소내 (다-1)			목재 (육각)			(1)	②-3	휴게소내 (다-1)			목재 (육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 (팔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 (팔각)			(1)	
	소 계			3,696	3,696							3,696	3,696					
유 회 시 설	어린이 놀이터	다	5개소	3,696	3,696					다	5개소	3,696	3,696					
		다-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다-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1,010)	(1,010)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1,010)	(1,010)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다-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다-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소 계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4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4
안 방 시 설	체 력 단련장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안동시청	다목적운동장	마	4개소	16,054	13,054			(441)	(441)		마	4개소	16,054	13,054			(441)	(441)	
		마-1	번2동 산23-1일대	15,000	12,000			(441)	(441)	4	마-1	번2동 산23-1일대	15,000	12,000			(441)	(441)	4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마-4	번2동 산23일대	243	243						마-4	번2동 산23일대	243	243					
	체력단련시설		전지역							30		전지역							30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민타장	바																	
		바-1																	
		바-2																	
		바-3																	
바-4																			
종합운동장	사	번동 산23-1일대	3,688	3,688						사	번동 산23-1일대	3,688	3,688						
실내배드민턴장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아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편의시설	소계			4,579	4,312							4,579	4,312						
	약수터	아	4개소	382	382					자	4개소	382	38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일반 시설	약수터	아-1	번2동 산16일대	(83)	(83)					자-1	번2동 산16일대	(83)	(83)					
		아-2	번2동 산14-1일대	(178)	(178)					자-2	번2동 산14-1일대	(178)	(178)					
		아-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아-4	번2동 산23-14일대	(64)	(64)					자-4	번2동 산23-14일대	(64)	(64)					
	주차장	자	6개소	4,197	3,930					차	6개소	4,197	3,930					
		자-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자-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자-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자-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자-5	미아3동 산25-38일대	(695)	(695)					차-5	미아3동 산25-38일대	(695)	(695)					
녹지 및 기타	자-6	미아동 산1-5일대	(211)	(211)					차-6	미아동 산1-5일대	(211)	(211)						
			378,417.4	-							378,417.4	-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4. “라”지구(성북지역)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83,403	68,272	11	5,183.99	7,033.00	2	183,403	68,272	11	5,078.44	6,984.28	2	감)105.55㎡(바닥) 감)48.72㎡(연면)
기 반 시 설	소 계	24,381					24,381	24,381					변경 없음
	도 로	21,612					21,612	21,612					변경 없음
	광 장	2,769					2,769	2,769					변경 없음
	휴양시설	2,636	2,636	1	200	200		2,636	2,636	1	200	200	
유흥시설	4,760	4,760		650	650	2	4,760	4,760		650	650	2	변경 없음
운동시설	32,896	31,896	2	3,247.99	3,893.00		32,896	31,896	2	3,247.99	3,893.00		변경 없음
교양시설	1,046	1,046	1	504	1,512		1,046	1,046	1	398.45	1,463.28		감)105.55㎡(바닥) 감)48.72㎡(연면)
편익시설	2,767	2,767	3	172	368		2,767	2,767	3	172	368		변경 없음
관리시설	720	720	4	410	410		720	720	4	410	410		변경 없음
녹지,기타	115,197						115,197						변경 없음
공원시설물 (법정40%)	(68,272㎡ / 183,403㎡) × 100% = 37.19%					(68,272㎡ / 183,403㎡) × 100% = 37.19%							
건폐율(10%)	(5,183.99㎡ / 183,403㎡) × 100% = 2.83%					(5,078.44㎡ / 183,403㎡) × 100% = 2.77%					(감 0.06%)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운동시설을 (법정 20%)	(32,942㎡ / 68,272㎡) × 100% = 48.30%					(32,942㎡ / 68,272㎡) × 100% = 48.3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계			4,760	4,760			650	650	2		650	650	2		
	어린이 놀이터	마		4,760	4,760							4,760				
		마-1	하월곡 산2-1	(770)	(770)			300	300	1	마-1	하월곡 산2-1	(770)	(770)	300	1
		마-2	상월곡 산1-1	(1,236)	(1,236)						마-2	상월곡 산1-1	(1,236)	(1,236)		
		마-3	상월곡 산1-1	(1,194)	(1,194)						마-3	상월곡 산1-1	(1,194)	(1,194)		
안녕시설	소계			31,896	31,896		2	3,247.99	3,893.00			31,896	31,896	2	3,247.99 3,893.00	
	다목적 운동장	바	하월곡 산2-1	6,508	6,508						바	하월곡 산2-1	6,508	6,508		
		2	하월곡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2	하월곡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테니스장	사		2,669	2,669						사		2,669	2,669		
		사-1	하월곡 산2-1	2,000	2,000						사-1	하월곡 산2-1	2,000	2,000		
		사-2	하월곡 산2-14	669	669						사-2	하월곡 산2-14	669	669		
		배드민턴장	아		365	365						아		365	365	
	아-4		하월곡 산2-87	(365)	(365)						아-4	하월곡 산2-87	(365)	(365)		
축구장	자			15,898	15,898					자		15,898	15,898			
	자-1	상월곡 산4-1	(8,966)	(8,966)						자-1	상월곡 산4-1	(8,966)	(8,966)			
	자-2	상월곡 산2-1	(6,932)	(6,932)						자-2	상월곡 산2-1	(6,932)	(6,932)			
	농구장	차	하월곡 산2-88	644	644					차	하월곡 산2-88	644	644			
실내배드민턴장	파	하월곡 산2-1	1,827	1,827		철근 철골	1	1,742.86	1,851.74			1,827	1,827	철근 철골	1 1,742.86 1,851.7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1,046	1,046		1	504	1,512				1,046	1,046		1	398.45	1,463.28	감)105.55㎡(바닥) 감)48.72㎡(연면)	
	독서실	3	하월곡 산2-1	1,046	1,046		1	504	1,512										폐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8	하월곡 산2-1	1,046	1,046	RC	1	398.45	1,463.28	신규
	소계			2,767	2,767		3	172	368				2,767	2,767		3	172	368		
편의시설	전망대	4	상월곡 산1-47	545	545		1	64	128			4	상월곡 산1-47	545	545		1	64	128	
	음수대	카	하월곡 산2-1	140	140							카	하월곡 산2-1	140	140					
	주차장	타		2,082	2,082							타		2,082	2,082					
		타-1	하월곡 산2-1	(702)	(702)							타-1	하월곡 산2-1	(702)	(702)					
편의시설	타-2	하월곡 산2-1	(337)	(337)							타-2	하월곡 산2-1	(337)	(337)						
	타-3	장위동 산3-92	(326)	(326)							타-3	장위동 산3-92	(326)	(326)						
	타-4	장위동 산3-86	(493)	(493)							타-4	장위동 산3-86	(493)	(493)						
	타-5	월곡 산2-36	(70)	(70)							타-5	월곡 산2-36	(70)	(70)						
	타-6	하월곡 산2-1	(154)	(154)							타-6	하월곡 산2-1	(154)	(154)						
	5		159	159		2	108	240			5		159	159		2	108	240		
	5-1	장위동 산3-117	(24)	(24)		1	(24)	(24)			5-1	장위동 산3-117	(24)	(24)		1	(24)	(24)		
	5-2	하월곡 산2-124	(135)	(135)		1	(84)	(216)			5-2	하월곡 산2-124	(135)	(135)		1	(84)	(21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관 리 사무실	6		720	720		4	410	410		6		720	720		4	410	410		
		6-1	하월곡 산2-1	(540)	(540)		1	(264)	(264)		6-1	하월곡 산2-1	(540)	(540)		1	(264)	(264)		
		6-2	상월곡 산1-41	(108)	(108)		1	(74)	(74)		6-2	상월곡 산1-41	(108)	(108)		1	(74)	(74)		
		6-3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6-3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창 고	7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7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녹지 및 기타				115,197								115,197								

다. 도로조서
“가”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14,527	37,095 (4,685)				
당초	대로	3류	1	25	445	(3,325)	도시계획도	8-221, 공원경계	83,공원경계	
당초	중로	3류	3	12	175	(1,360)	도시계획도	바-4	광장 가-9	
당초	소로	소계			2,878	13,834				
당초		3	1	5	456	1441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75	
당초		3	2	5	499	2490	연결로	소로 3-3	광장 가-6	
당초		3	3	6	135	924	연결로	녹지	광장 가-1	
당초		3	4	4	94	495	연결로	야생초화원	소로 3-3	
당초		3	5	4	9	37	연결로	주차장 버	소로 3-4	
당초		3	6	4	45	648	연결로	소로 3-2	소로 3-3	
당초		3	7	4	37	152	연결로	소로 3-6	미술관	
당초		3	8	5	494	2502	연결로	소로 3-14	소로 3-3	
당초		3	9	3	81	241	연결로	미술관	소로 3-11	
당초		3	10	3.6	48	116	연결로	소로 3-8	소로 3-11	
당초		3	11	4.5	51	217	연결로	소로 3-9, 10	소로 3-2	
당초		3	12	4	247	982	연결로	휴게소 가-5	휴게소 가-2	
당초		3	13	4	223	878	연결로	광장 가-6	소로 3-1	
당초		3	14	4.5	91	424	진입로	광장 가-6	소로 3-8	
당초		3	15	6	368	2287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어	
당초	산책로	소 계			11,029	18,576				
당초			1	2.5	270	53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4	
당초			2	2.9	29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당초			3	1.5	127	18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0	
당초			4	1.5	157	228	산책로	산책로 3	운동시설 너-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5	1.5	3	7	산책로	산책로 4	파고라	
당초			6	1.5	43	60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2	
당초			7	1.5	13	32	산책로	산책로 4	운동시설 너-4	
당초			8	1.2	32	41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9	1.2	21	54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10	1.5	255	387	산책로	산책로 12	전망대	
당초			11	1.5	22	33	산책로	산책로 12	운동시설 너-4	
당초			12	2	289	508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5	
당초			13	1	78	97	산책로	휴게시설 자-8	운동시설 너-6	
당초			14	1.3	54	75	산책로	운동시설 너-6	산책로 15	
당초			15	1.5	110	170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시설 자-6	
당초			16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7	
당초			17	1.5	201	344	산책로	산책로 15	부지경계	
당초			18	2	56	111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17	
당초			19	1.5	19	38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7	
당초			20	1.2	21	29	산책로	산책로 17	운동시설 너-5	
당초			21	1.2	115	13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2	1.2	38	44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3	2	4	9	산책로	산책로 22	운동시설 너-5	
당초			24	1.2	24	2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5	1.5	20	30	산책로	산책로 10	휴게소 자-5	
당초			26	1.5	230	344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12	
당초			27	1.5	107	160	산책로	광장 가-7	산책로 134	
당초			2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27	산책로 134	
당초			29	1.5	16	29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30	
당초			30	1.5	25	41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29	
당초			31	1.5	2	3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2	2	29	48	산책로	산책로 34	부지경계	
당초			33	1.5	7	11	산책로	녹지	산책로 34	
당초			34	1.5	185	265	산책로	데크쉼터 카-2	산책로 31	
당초			35	1.5	172	254	산책로	저류지	소로 3-12	
당초			36	1.5	27	37	산책로	저류지	광장 가-3	
당초			37	2	48	99	산책로	광장 가-3	데크쉼터 카-4	
당초			38	1.5	49	7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39	1.5	87	129	산책로	데크쉼터 카-4	데크쉼터 카-5	
당초			40	1.5	100	150	산책로	소로 3-12	산책로 35	
당초			41	1.2	45	9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2	1.2	44	53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3	1.5	18	2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44	2	16	32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45	2.8	31	89	산책로	산책로 43, 44	소로 3-1	
당초			46	1.5	21	32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5	
당초			47	1.5	33	69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6	
당초			48	2	57	118	산책로	산책로 49	소로 3-1	
당초			49	2	46	92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0	2	52	1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1	2	69	111	산책로	광장 가-1	방문자센터	
당초			52	2	8	15	산책로	산책로 53	소로 3-3	
당초			53	2	49	10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54	2.5	15	37	산책로	소로 3-8	구한옥	
당초			55	1.2	25	28	산책로	구한옥	광장 가-2	
당초			56	2	33	66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6	
당초			57	1.5	93	141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9	
당초			5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57	수변쉼터 타-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59	1.5	16	25	산책로	산책로 57	산책로 58	
당초			60	2	5	9	산책로	소로 3-8	광장 가-9	
당초			61	1.5	40	67	산책로	산책로 57	월영연못	
당초			62	2.3	6	15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3	
당초			63	1.5	118	176	산책로	광장 가-9	소로 3-8	
당초			64	1.5	14	20	산책로	산책로 63	월영연못	
당초			65	1.5	12	18	산책로	월영연못	월영연못	
당초			66	2	7	15	산책로	소로 3-6	월영연못	
당초			67	1.5	24	39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소로 3-6	
당초			68	1.5	34	51	산책로	수변쉼터 타-4	수변쉼터 타-5	
당초			69	2	17	33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수변쉼터 타-1	
당초			70	1.8	6	10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9	
당초			71	2.4	4	11	산책로	소로 3-8	수변쉼터 타-1	
당초			72	1.2	39	46	산책로	소로 3-10	창포원	
당초			73	1.2	40	48	산책로	창포원	산책로 74	
당초			74	2	52	106	산책로	창포원	소로 3-11	
당초			75	2	198	457	산책로	소로 3-13	광장 가-4	
당초			76	2.6	5	13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2	
당초			77	1.5	15	36	산책로	소로 3-2	월영연못	
당초			78	2	19	40	산책로	산책로 35	데크쉼터 카-3	
당초			79	1.5	72	107	산책로	문화센터	광장 가-6	
당초			80	1.5	118	177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79	
당초			81	1.5	80	122	산책로	광장 가-8	전망대	
당초			82	1.5	7	10	산책로	광장 가-8	문화센터	
당초			83	2	27	54	산책로	소로 3-14	광장 가-6	
당초			84	2	39	78	산책로	소로 3-14	데크쉼터 카-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85	1.5	32	45	산책로	산책로 86	어린이놀이터 파-1	
당초			86	1.5	67	100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87	
당초			87	2	362	656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 자-1	
당초			88	2	35	73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0	
당초			89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90	다목적 운동장 거-2	
당초			90	1.5	223	335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87	
당초			91	1.5	87	129	산책로	산책로 90	산지	
당초			92	2.5	305	61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99	
당초			93	1.5	160	243	산책로	산책로 92	중로 3-1	
당초			94	2	199	401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2	
당초			95	1.5	63	95	산책로	산책로 94	산책로 99	
당초			96	2	180	369	산책로	산책로 97	부지경계	
당초			97	2	72	164	산책로	녹지	산책로 99	
당초			98	1.5	38	57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97	
당초			99	2	548	1096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120	
당초			100	1.5	208	310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8	
당초			101	1.3	191	272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87	
당초			102	1.5	245	363	산 책 로	산책로 87	휴게소 자-3	
당초			103	2	53	99	산 책 로	휴게소 자-4	산책로 70	
당초			104	1.5	85	127	산 책 로	휴게소 자-4	운동시설 너-8	
당초			105	1.2	35	40	산 책 로	산책로 104	운동시설 너-8	
당초			106	1.2	55	66	산 책 로	운동시설 너-8	산책로 108	
당초			107	1.2	20	28	산 책 로	산책로 106	운동시설 너-8	
당초			108	1.5	120	173	산 책 로	휴게소 자-2	운동시설 너-1	
당초			109	2	332	567	산 책 로	산책로 108	녹지	
당초			110	1.5	173	260	산 책 로	휴게소 자-2	산책로 99	
당초			111	1.5	25	38	산 책 로	운동시설 너-1	산책로 10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12	1.5	37	60	산책로	산책로 111	산책로 109	
당초			113	2	73	123	산책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너-1	
당초			114	1.2	26	31	산책로	산책로 115	산책로 113	
당초			115	1.5	43	65	산책로	산책로 113	운동시설 너-2	
당초			116	1	7	10	산책로	운동시설 너-2	산책로 117	
당초			117	1	25	25	산책로	녹지	산책로 109	
당초			118	1.2	99	115	산책로	산책로 109	산책로 120	
당초			119	1.2	143	173	산책로	산책로 121	산책로 118	
당초			120	1.8	270	383	산책로	녹지	산책로 121	
당초			121	1	48	48	산책로	산책로 119	산책로 109	
당초			122	1.5	104	152	산책로	산책로 120	녹지	
당초			123	1.2	132	17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4	1.5	75	11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5	1.5	24	46	산책로	산책로 123	산책로 124	
당초			126	1.2	15	19	산책로	산책로 122	산책로 121	
당초			127	1	40	40	산책로	녹지	부지경계	
당초			128	2	126	256	산책로	산책로 99	운동시설 너-7	
당초			129	1.5	38	67	산책로	산책로 128	부지경계	
당초			130	1.5	26	38	산책로	산책로 99	부지경계	
당초			131	2	77	167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133	
당초			132	2	186	407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133	2	113	227	산책로	산책로 132	산책로 96	
당초			134	2.3	341	7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8	
당초			135	2	166	316	산책로	소로 3-8	소로 3-8	

다. 도로조서
“나”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5,089	9,211 (14,205)				
당초	중로	소 계			605	(11,828)				
당초		1류	1	20	571	(11,420)	도시계획도	습지생태원 차	주차장 타-2	
당초		3류	1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주차장 타-3	
당초	소로	소 계			827	1,500 (2,377)				
당초		3류	1	6	250	1,500	시설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2	
당초		3류	2	6	577	(2,377)	도시계획도	주차장 타-3	어린이놀이터 다-1	
당초	산책로	소 계			3,657	7,711				
당초			1	2	214	428	산책로	번2동 산27-121	어린이놀이터 다-3	
당초			2	2	129	2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	
당초			3	4	150	600	산책로	광장 가-3	어린이놀이터 다-3	
당초			4	2.3	275	632	산책로	광장 가-3	번2동 산27-108	
당초			5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4	
당초			6	2	78	156	산책로	주차장 타-4	휴게소 나-2	
당초			7	2	23	46	산책로	광장 가-4	휴게소 다-2	
당초			8	2	351	702	산책로	휴게소 나-2	산책로9	
당초			9	2	264	528	산책로	광장 가-3	체력단련장 라-1	
당초			10	2	79	158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1	산책로9	
당초			11	2	216	432	산책로	보태닉가든 자	산책로9	
당초			12	2	70	140	산책로	산책로1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3	2	43	86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당초			14	2	55	110	산책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라-1	
당초			15	2	193	386	산책로	산책로2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6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총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7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8	
당초			18	1.5	86	129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9	2~2.5	39	88	산책로	중로 1-1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20	2	321	64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4	산책로18	
당초			21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3	
당초			22	2	42	8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3	2	21	42	산책로	산책로26	체력단련장 라-1	
당초			24	2	22	4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5	2	143	286	산책로	관목원 사	산책로26	
당초			26	2	133	26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1	
당초			27	2	18	36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9	
당초			28	2	87	174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9	
당초			29	2	130	260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5	
당초			30	4	80	318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보태닉가든 자	
당초			31	1	73	73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번2동 산27-108	
당초			32	1	13	13	산책로	광장 가-1	번2동 산27-108	

다. 도로조서
“다”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544	20,334 (10,683)				
당초	중로	소 계			659	(8,118)				
당초		3류	1	12~15	625	(7,710)	도시계획도	산1-4,공원경계	산13-1,공원경계	
당초		3류	2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산책로57	
당초	소로	소 계			777	4,376 (2,565)				
당초		1류	1	10	190	1,900	진 입 로	번2동 637-7	번2동 산25-8	
당초		1류	2	11	20	220	진 입 로	소로 1-1	다목적운동장 마-1	
당초		2류	1	9	285	(2,565)	도시계획도	중로 3-2종점	산책로1종점	
당초		2류	2	8	282	2,256	시설연결로	소로 3-1종점	중로 3-2시점	
당초	산책로	소 계			8,108	15,958				
당초			1	2	619	1,238	산책로	광장 가-5	미아3동 산13-6	
당초			2	2	90	180	산책로	광장 가-5	산책로1	
당초			3	2	122	244	산책로	광장 가-5	부지경계	
당초			4	2	37	74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2	산책로5	
당초			5	2	144	28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6	2	155	31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7	2	300	60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6	
당초			8	1.5	57	86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7	
당초			9	2	41	82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0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당초			11	2	182	36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당초			12	2	545	1,0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13	2	208	4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당초			14	2	72	144	산책로	산책로13	배드민턴장 바-3	
당초			15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31	배드민턴장 바-3	
당초			16	2	58	116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7	2	52	104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15	
당초			18	2	203	406	산책로	산책로31	약수터 아-3	
당초			19	2	169	318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20	
당초			20	2	520	1,040	산책로	산책로15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1	2	63	126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22	
당초			22	2	158	31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12	
당초			23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	
당초			24	2	36	72	산책로	산책로23	배드민턴장 바-2	
당초			25	2	76	152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3	
당초			26	2	61	122	산책로	산책로20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7	2	292	584	산책로	산책로29	산책로20	
당초			28	2	122	244	산책로	배드민턴장 바-4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9	2	335	670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37	
당초			30	2	87	17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당초			31	2	14	2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2시점	
당초			32	2	47	9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당초			33	2	18	36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0	
당초			34	2	73	146	산책로	휴게소 나-3	산책로35	
당초			35	2	169	338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7	
당초			36	2	150	3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7	2	454	908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28	
당초			38	2	40	80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37	
당초			39	2	38	76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0	
당초			40	2	549	1,098	산책로	종합체육관(사)	산책로54	
당초			41	1.5	96	144	산책로	소로 1-1	광장 가-4	
당초			42	1.5	28	42	산책로	소로 1-1	휴게소 나-4	
당초			43	2	115	230	산책로	휴게소 나-5	어린이놀이터 다-5	
당초			44	1.5	143	215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5	
당초			45	1.5	119	179	산책로	산책로40	부지경계	
당초			4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45	다목적운동장 마-4	
당초			47	1.5	20	3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4	부지경계	
당초			48	2	50	100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0	
당초			49	1.5	95	143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당초			50	1.5	19	2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당초			51	2	45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52	
당초			52	2	99	198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53	
당초			53	2	36	72	산책로	산책로54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54	2	96	192	산책로	산책로37	휴게소 나-2	
당초			55	2	63	126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체력단련장 라-1	
당초			56	2	14	28	산책로	산책로55	휴게소 나-1	
당초			57	2.3	186	427	산책로	중로 3-2	미아3동 산25-38	
당초			58	2	81	162	산책로	미아3동 산25-38	휴게소 나-6	

다. 도로조서
“라”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855)	21,742				
변경					(3,820)	21,612				
당초	중로	소 계		15	(28)	(420)				
당초		2	1	15	28	420	간선도로	부지서측	부지동측	
당초	소로	소 계			2,341	17,936				
당초		1	3	10	276	2,760	주진입로	부지남서측하단	주차장	
당초		1	4	10	80	800	주진입로	소1-3	부지남측하단	
당초		1	5	10	120	1,200	주진입로	부지남측하단	부지남측경계	
당초		1	6	10	156	1,560	주진입로	부지남측하단	주차장	
당초		1	9	10	490	4,900	주진입로	소3-8	부지남측하단	
당초		1	10	10	140	1,400	주진입로	소1-9	축구장	
당초		3	2	6	200	1,200	주진입로	부지동측경계	소1-3	
당초		3	7	6	50	300	주진입로	부지북측경계	부지서측	
당초		3	8	6	90	540	주진입로	주차장	부지동측	
당초		3	9	6	10	60	주진입로	부지서측경계	소3-18	
당초		3	10	6	50	300	주진입로	소3-9	월곡초등학교앞	
당초		3	11	6	40	240	주진입로	소3-10	놀이터앞	
당초		3	13	4	335	1,340	주진입로	주차장	소3-26	
당초		3	14	4	234	936	주진입로	소3-8	전망대	
당초		3	15	4	50	200	주진입로	소3-32	휴게광장	
당초		3	16	4	50	200	주진입로	부지동남측경계	소3-1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소 계			1,486	3,386				
변경					1,421	3,256				
당초	산책로	3	17	3	140	420	산책로	소공원	중2-1	
당초		3	18	3	170	510	산책로	중2-1	소3-1	
당초		3	19	2	55	110	산책로	소3-13	주차장	
당초	산책로	3	20	2	60	120	산책로	소3-13	관리사무소	
당초		3	21	2	70	140	산책로	소3-3	테니스장, 휴게실	
당초		3	22	2	35	70	산책로	소1-13	배드민턴장	
당초		3	23	3	82	246	산책로	소3-17	소3-17	
당초		3	24	3	22	66	산책로	소1-6	진입광장	
당초		3	25	2	110	220	산책로	주차장	소3-26종점	
당초		3	26	2	115	230	산책로	소3-14	소3-13	
당초		3	27	2	122	244	산책로	소3-13	소3-26	
당초		3	28	2	65	130	산책로	소3-27	소3-29	
당초		3	29	2	210	420	산책로	전망대	휴게광장	
당초		3	31	2	55	110	산책로	소3-29	소3-32	
당초		3	32	2	110	220	산책로	소1-10	전망대	

◆ 노원구공고 제2016-762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노원구고시 제2016-84호(2016. 9. 2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169-409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10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9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9-409
2.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행(주차장)
 - 나. 사업의 명칭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4. 사업의 내용
 - 가. 면 적 : 235㎡
 - 나. 사업규모 : 지상 평면식주차장 약 10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7. 열람장소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104)
8. 열람기간 : 2016. 9. 29 ~ 2016. 10. 12

토 지 조 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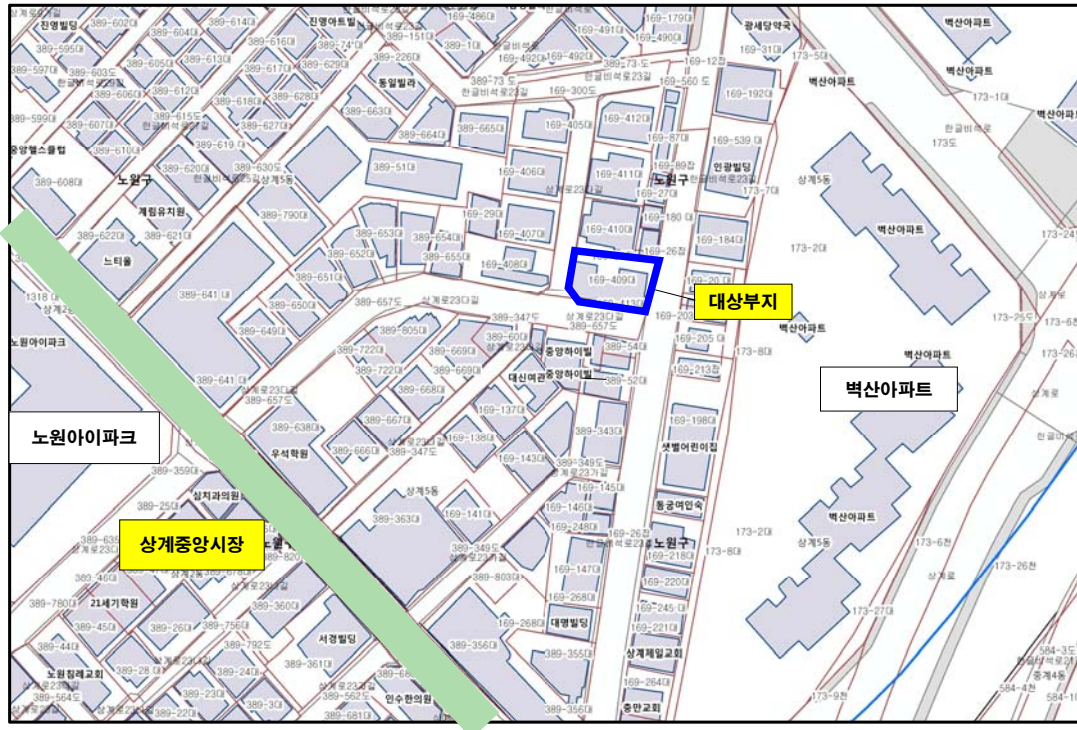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169-409	대	235	김만봉	노원구 중계동 364 신안동진아파트 105동 405호	-	-	-	
계			235		-	-	-	-	

물 전 조 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구 조	규모	연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169-409	시멘트 블록조	지하1 지상1	242.78	김만봉	노원구 중계동 364 신안동진아파트 105동 405호	-	-	-	- 지하1층 점포 140.3㎡ - 지상1층 근린생활 102.48㎡
계				242.78		-	-	-	-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노원구공고 제2016- 7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75호(2013.11.14.)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노원구 고시 제2014-12호(2014.04.03.)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리된 노원구 월계동 447-1호 광운대학교(광운학술정보관)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었기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처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2116-389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월계동 447-1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2) 사업의 명칭 : 광운대학교 광운학술정보관(지하주차장 포함)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66,054.00㎡
- 2) 변경전(기존규모) : 화도관 외 13개동, 연면적 116,843.06㎡
- 3) 변경후(증축 후) : 화도관 외 14개동, 연면적 143,995.77㎡
- 4) 신청현황
 - 광운학술정보관 및 주차장 : 지하3층 지상4층, 증축면적 27,152.71㎡(별동증축)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학교법인 광운학원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월계동, 광운대학교)

마. 사업의 허가, 착수 및 준공일

- 1) 허가일 : 2014.03.27
- 2) 착공일 : 2014.09.24
- 2) 준공일 : 2016.09.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고시 방법 : 시보 게재

◆ 양천구공고 제2016-1024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9호로 결정(변경)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6.09.29.~10.14(15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7층 균형개발과(☎2620-3513)
 3.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1) 용도지역·지구 결정 : 변경 없음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가) 교통시설
 - ① 도로 : 변경없음
 - ② 자동차정류장 : 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3	자동차정류장	-	신월동 545 일원	2,920.5	감)2,920.5	-	서고271 (79.6.25)	

■ 변경사유 : 공영차고지 구성에 따른 기능 상실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
- 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16-1026호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992-729호('92.12.23.)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0-593호(2000.9.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신탄리 택지개발 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본관 7층, ☎ 2620-3530)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1) 가구 및 획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명 칭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기정	의료시설 용지	1	5,399.9	신정동 1268번지	5,399.9
변경	상업·업무시설 용지	1	5,399.9	신정동 1268번지	5,399.9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2620-353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16-983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62(1979. 8. 10)호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되고 서울 특별시 허가 번호 제170(1980. 5. 19.)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원부변경 허가를 득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 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되지 않거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 명칭 : 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후 정류장 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장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 2,607㎡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시행	금회 시행	차후 시행		
결정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실시계획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면적 변경없음 · 옹벽(71m) 철거 · 건물철거(1동) (지하1층,지상3층) · 정류장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 성명 : 범일운수(주) 대표이사 박도식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 : 2년 이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아. 사업목적

○ 당초 설계 시 인접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인접건축물의 신축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옹벽 및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함.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조 서

■ 결 정 조 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시행	금회시행	차후시행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건축물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율(%)	층 수	비 고
기정	17.75%	40%	최고3층 이하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4.41%	5.03%	최고2층 이하	지상2층

2. 건축물 계획 조서

동 별	층 별	명 칭	사용명칭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시흥CNG충전소 관리동	지하1층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111.40	멸실	
	1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281.89	멸실	
	1층	자동차 관련시설	주방	46.46	멸실	
	2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281.89	멸실	
	3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301.40	멸실	
	계			1,023.04	0.00	
시흥CNG충전소 사무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2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계			32.70	32.70	
시흥CNG충전소 압축시설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CNG저장소	77.55	77.55	
시흥CNG충전소 충전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충전기	21.00	21.00	
합 계				2,111.48	131.25	
건축면적				462.76	114.9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042.89	131.25	
건 폐 율			$114.90 \div 2,607 \times 100$	17.75%	4.41%	
용 적 률			$131.25 \div 2,607 \times 100$	40.00%	5.03%	

3. 토 지 이 용 계 획 조 서

구 분	규 격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금회변경	기 정	금회변경	
건 축 부 지	여객자동차정류장	462.76	114.90	17.75%	4.41%	347.86(감)
정류장 부지	콘크리트 포장 (T=20CM)	1,719.24	1,907.1	65.95%	73.15%	187.86(증)
주차장 부지	아스팔트	72	492	2.76%	18.87%	기정주차수:6면 변경주차수:15면
통행로 부지		131	93	5.02%	3.57%	38.00(감)
기타부지(경사면)		222	-	8.52%	0.00%	222.00(감)
계		2,607	2,607	100.0	100.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작성자 : 하나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인)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 사업명: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단위:m²)

일련 번호	소재 지동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시흥동	271-51	대	2,607	2,607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계				2,607	2,607						

5.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작성자 : 하나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인)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 사업명: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단위:m²)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수량 (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구	동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금천구	시흥동	271-51	관리동	철근콘크리트	1,023.04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 가 101-1	근저 당권	
				사무동	철근콘크리트	32.70						
				압축시설동	철근콘크리트	77.55						
				충전동	일반철골구조	21.00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조 감 도



◆ 영등포구공고 제2016-13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768호('64.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79호('16.09.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률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림동 187-17 ~ 200-1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9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 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아.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관계서류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있으실 때에는 열람공고기간 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분할예정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모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87-17	대	7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일
2	도림동 187-108	대	3	3	박순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5-6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3	도림동 187-18
3	도림동 187-109	대	46	46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7-19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3	도림동 187-19
4	도림동 187-110	대	2	2	니문갑 외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6-25				도림동 187-21
5	도림동 187-107	대	47	4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도림동 187-65
6	도림동 187-66	대	43	43	조청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26, 203동 306호 (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동일
7	도림동 200-29	대	60	60	정형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0-5 한신아파트2차 201-1202				도림동 200-2
8	도림동 200-30	대	19	19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35-8				도림동 200-3
9	도림동 200-34	대	87	87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도림동 200-16

※ 상기 인가된 토지지번은 분할 예정 번지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1	도림동 187-19	주택 (1층)	목조	55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11길 8-16 (도림동)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대문		1식						
		보일러실		1식						
2	도림동 187-66	주택 (1층)	목조	72	조청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 203동 306호 (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3	도림동 200-2	주택 (1층)	목조	85						무허가
4	도림동 200-3	주택 (1층)	목조	13	황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 관악현대아파트 118-304				
5	도림동 200-13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22	정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 (반배동, 삼환나파르빌)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6	도림동 200-14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정세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방배동, 삼환나따르빌)				
		창고		1식						
7	도림동 200-15	주택 (1층)	목조	62						무허가
		부여		1식						
		창고		1식						
8	도림동 200-16	주택 (1층)	목조	19						무허가
		창고		1식						
		화장실		1식						

■ 위 치 도



◆ 강남구공고 제2016-16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534호(1983.9.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호(2012.1.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강남구고시 제2016-110호(2016.8.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한 강남구 선릉로 18길 15(개포동 156) 일대 달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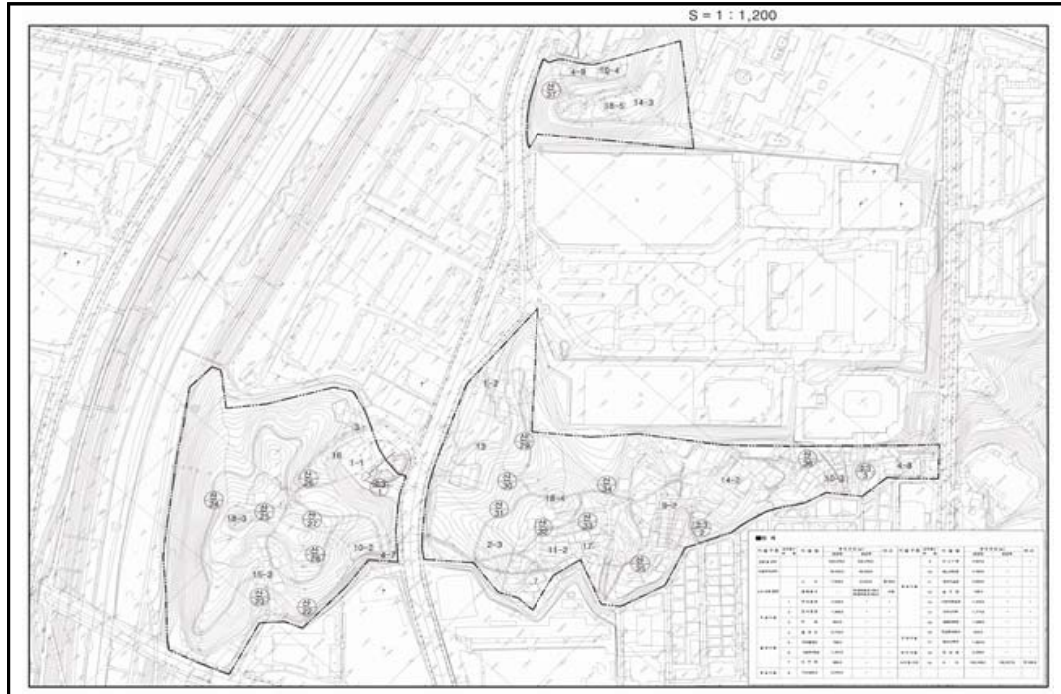
-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변경없음)
- 2)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변경없음)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달터근린공원 조성
- 4)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기정 : 6,160m²
 - 변경 : 7,120m²(증960m²)
 - ※ 지장물 140동(증17동), 이주희망한 세대 추가 시행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작성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변경없음)
- 6)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추가) : 따로붙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09:00~18:00)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02-3423-6993)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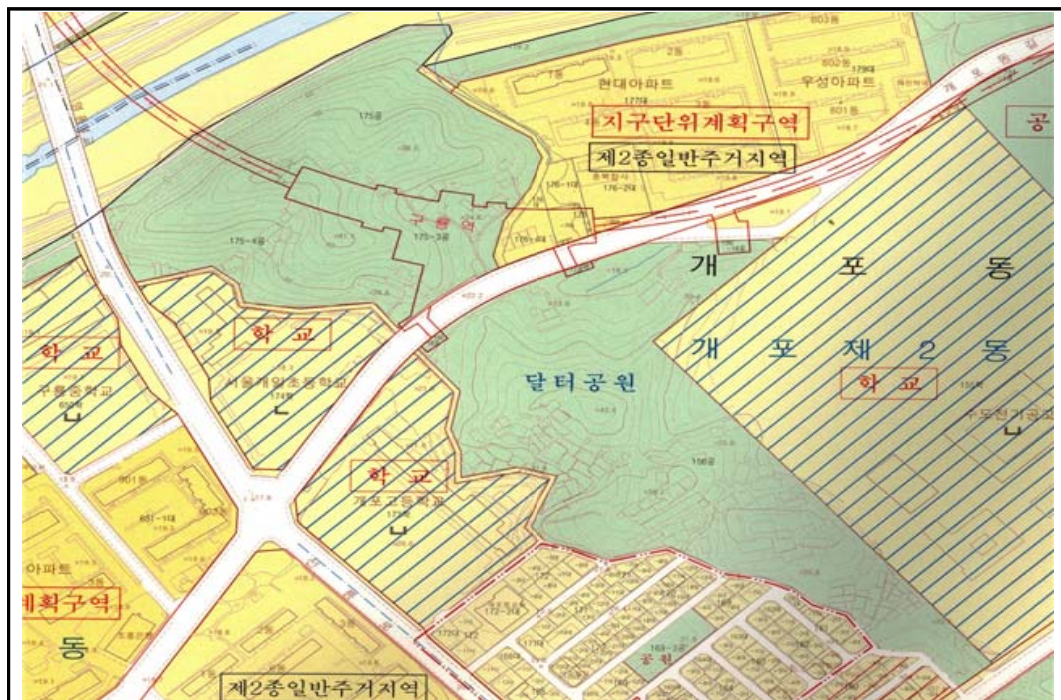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을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18㎡)	1	주거	남궁**	노원구 동일로242다길 19	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28㎡)	1	주거	김**	강남구 선릉로18길 15			
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60㎡)	1	주거	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38㎡)	1	주거	송**	강남구 선릉로18길 15			
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함석(94㎡)	1	주거	유**	강남구 선릉로18길 15			
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함석(38㎡)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함석(28㎡)	1	주거	홍**	강남구 선릉로18길 15			
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57㎡)	1	주거	김**	강남구 선릉로18길 15			
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61㎡)	1	주거	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0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함석(57㎡)	1	주거	김**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89㎡)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샌드위치 판넬(33㎡)	1	주거	김**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함석(75㎡)	1	주거	신**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함석(84㎡)	1	주거	임**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샌드위치 판넬(52㎡)	1	주거	유**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함석(74㎡)	1	주거	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	강남구 개포로403	건물	목재/스레트/함석(74㎡)	1	주거	김**	강남구 개포로403			

■ 설계도서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셀파이엔씨(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9	한강철교 ~ 행주대교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시추조사	2016.9.21 ~ 2016.10.15	2016. 9.2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가양대교 ~ 한강철교	선박 7척 (기선 3척, 부선 4척)	평창동계올림픽 G-500 문화행사	2016.9.21 ~ 2016.9.28	2016. 9.2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계 내 한강 (동호대교)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동호대교 보수공사	2016.9.26 ~ 2016.10.26	2016. 9.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홍익기술단	경기도 용인시 중동 신동백서해그랑2차 206동 903호	서울외곽선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하단 수상부위	선박 2척 (기선1,부선1)	서울외곽선 강동대교 등 29개소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선박운항	2016.9.26 ~ 2016.9.30	2016. 9.26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19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3. 공시송달 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 번호	성명	주소	부과 예정액(원)	자진납부금 액(원)	사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관련 위반 과태료	2016-06	1457	신*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3길 *	1,000,000	800,000	폐문 부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관련 위반 과태료	2016-07	2510	최*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	500,000	400,000	폐문 부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관련 위반 과태료	2016-07	2532	이*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27번길 ***	500,000	400,000	수취인 불능

4. 공고기간 : 2016. 9. 22 ~ 2016. 10. 5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 10. 6 ~ 2016. 10. 19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에서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수령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02-3780-0787)으로 문의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19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9.29. ~ 2016.10.12.(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0.13. ~ 2016.10.26.(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충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773	양*욱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서관로**다길 ***~*	(한남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783	정*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	(추암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794	오*양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우정로**길 *	(민원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00	허*경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호 (친호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04	정*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호 (역삼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07	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	가동 ***호 ()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10	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번 길 **	***호 (성남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20	박*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길 **	(삼선동*가)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23	조*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	(성수동*가)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25	AMGA***ATAR BA****UNK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라길 **	(장위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 주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26	최*정 이*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	***동 ***호 (신월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28	양*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길 **	***동 ***호 (봉천동, 현대아파트)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43	홍*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길 **	***동***호 (청담동, 건영아파트)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47	김*형 박*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	***동 ***호 (평창동, 예능교회)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48	오*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동 ***호 (부평동, 거모플러스아파트)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50	권*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은곡로**번길 **	***동 ***호 (신곡동, 신곡건영아파트)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62	이*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래로 ****	***동 ***호 (청구아파트)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64	박*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호 (부개동, 삼피주택)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66	LI J**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차양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71	김*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	(이문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72	양*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상동구 금호산*나길 *	(금호동*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81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호 (강일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86	양*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호 (자양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91	한*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 호 (금곡동, 래미안금곡아파 트)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95	김*복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나길 **호 (등촌동, 에림힐터운)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96	장*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길 ** 호 (증산동, 한화주덕)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899	박*범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 호 (장안동, 장안현대벤처빌)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01	양*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길 ** 호 (우면동, 엘에이치서초*단 지아파트)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02	황*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호 (석촌동, 모은주덕)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05	(주)에***터스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인산대학로 **호 (이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09	김*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길 ***호 (영창동, 국제빌라)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11	홍*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호 (방화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 주소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13	고*자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화대로**길 ***	*동 ***호 (마곡동, 신인빌라)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14	유*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화대로**길 **	***동 ***호 (병화동, 병화*단지아파트)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15	김*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신로*** 번길 ***-*	***동 ***호 (배방삼정그린코아아파트)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17	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호 (길동, 스타밸리스)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19	임*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차인물 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 로 ***-***	(고촌읍)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2922	노*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달래로**나길 ***	(회곡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6-08	003031	512번가의 *** 사람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	(운남동)

◆ 한강사업본부 공고 제2016-19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9.29. ~ 2016.10.12.(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0.13. ~ 2016.10.26.(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충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5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예*담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 ***	***번지 *층 (망원동, 현진에버빌)
2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4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포*레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양로**길 **	(구의동)
3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3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식회사 *** 터테인먼트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길 *	*층 (청담동, 나빌딩)
4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4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숙지	이사불명	서울 강북구 번동	***~* *층
5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4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현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호 (신정동, 길훈로즈빌)
6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103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자*수	수취인불명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번길 ***~***	***동 ***호 (평내동, 진주아파트)
7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4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리	수취인부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내천로 ***~*	***호 (안양동, 정일빌라)
8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4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호 레일버전 (신림동)
9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4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임*금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대신로 **	*층 연상 (신당동)
10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4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식회사 ***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장로 ***	*층 A~*호 (길동, 부광빌딩)
11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104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	***동 ***호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12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101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송*권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	****동 ***호 (별내동, 별사랑마을 모아미레도 아파트)
13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105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갑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동 ***호 (상암동, 상암 카이저팰리스)
14	10-288706	[시일만기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100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윤*주	폐문부재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	***동 ***호 (영월동, 대성현대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04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길 **	***호 (장안동, 현전빌딩)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65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양*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	***동 ***호 (상암동, 상암 카이저팰리스)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0983	지정된 장소에서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최*수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번길 ***-*	***동 ***호 (삼신아파트)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51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길 **	(미이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길 **	***호 (문정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091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철	수취인부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동 ***호 (백현동, 백현마을*단지판교 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7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담양길 **-*	***동 ***호 (장지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095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이무역	폐문부재	경기도 안성시 모계면 너리굴길 **	()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1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5,000	문*희,박*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면목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20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종대로**길 *	***호 (오금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2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석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	***동 ***호 (우림아파트)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102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양*식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신로 ***	***동 ***호 (중산동, 하늘마을*단지아파트)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역면과태료	2016-08	000965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지암동)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4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 85번지
 - 면 적 : 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 내 역 :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09.20.~2021.09.19.(2016.09.20.~2016.11.1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4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21-2, 233-1번지
 - 면 적 : <당초> 영구 30㎡

<변경> 일시 183㎡, 영구 15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역사이편 차집관로 유지관리용 맨홀 설치
- 내 역 : <당초> 맨홀 2개소

<변경> 맨홀 8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2014.12.19.~2015.02.28.

<변경>2014.12.19.~2019.12.18.(2016.09.21.~2016.12.2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4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185, 377-1번지
<변경>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185번지 등 8필지
- 면 적 : <당초>영구 1,569㎡
<변경>영구 1,591㎡, 일시 4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헬리포트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 헬리포트장 1개소	- 헬리포트장 1개소 - 시설개선 1식 * 착륙구역주변등 24등(매립), 헬기장 등대 1개소, 전력인입 관로 등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2011.10.30.~2016.10.29.

<변경>2011.10.30.~2016.12.31.(2016.09.23.~2016.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44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공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권영신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61길, 30-99
3. 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산 93-4
 - 면 적 : 44㎡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존 주택 진입로 설치
 - 내 역 : 도로 83m(B=6m)
5. 공사기간 : 2016.09.23.~2017.04.22.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